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스톡홀름 선언 (Declaration of Stockholm) 1977년 12월 11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북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온 200여명의 대표자 및 참가자로 구성된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앰네스티 스톡홀름 회의는 다음 사항을 강기한다.

- 사형제도는 극도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임에 동시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 사형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다.
- 사형은 폭력행위이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 일으키는 경향을 가진다.
- 사형을 두려워하는 행위에 따르는 고뇌는 사형집행과정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까지 잔인한 고통을 안겨준다.
- 사형제도가 특별한 법적의지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중될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사형제도가 의문의 실종, 불법처형, 정치적 살인 등으로 생겨지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 사형은 돌아갈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에게 더러운 위험도 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국가는 예외없이 그 사법관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정치적 탄압 목적의 처형은 정부관리가 행하였든, 다른 사람이 행하였든간에 꼭같이 용납될 수 없다.
- 사형제도의 폐지는 국제법상 선포된 협약들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 불가 결한 조치이다.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사형제도는 절대적으로 또한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 정부에 의하거나 정부가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사형제도도 규탄한다.
- 사형제도의 총체적인 폐지를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 한다.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지국 및 국제적인 민간단체들은 사형제도 폐지 목적의 홍보물을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연합은 사형제도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할 것.

의료요원의 사형집행 간여에 관한 국제사면위원회 선언

국제사면위원회는 힙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이 의사는 환자들에게 이로움을 베풀고 결코 해로움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명화한 사실을 상기하며, “세계의학협회 동경선언”이 “위협에서도 인간생명에 대한 지고의 의경심이 지켜져야 하며, 인간성의 법칙에 배되는 의학지식은 결코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 사실을 고려하며, 1981년 리스본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가 의사들이 사형집행에 간여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결의한 사실을 재삼 고려하며, 유엔 의료윤리헌장이 의료요원 특히 의사들에게 수감자 심신의 건강을 평가, 보호하고 개선시키는 행위 외의 어떤 관계도 수감자와 유지하지 않도록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重시하며, 의료요원들이 사형선고 또는 그 집행을 앞둔 수감자의 심신상태를 진료하거나 평가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의료요원들의 그러한 행위가 수감자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수감자의 처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윤리적인 역설을 시식하며, 의료요원들이 특히, 심신상태가 처형에 적합한지의 여부 판단, 처형과 관련된 절차를 준비, 집행, 감독하거나 타인에 조언하는 것, 죄수가 아직 사망하지 않은 경우 처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처형도중 의학검진을 실시하는 것 등의 행위를 통해 사형집행에 간여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사형집행에 의료요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은 의료윤리에 위배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의료요원이 사형집행 과정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므로 의료직 종 단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재삼 촉구한다.

- 사형집행 과정에 간여하기를 거부하는 의료요원을 보호할 것.

- 이런 목적을 위하여 결의안을 제작할 것.

- 이러한 규준이 전세계적으로 준수되도록 노력할 것.

(본 선언은 국제사면위원회 의료자문위원회가 1981년 성안하였고 이 분야의 발전양상에 비추어 1988년 개정한 것이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계各地에서에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지부와 그룹, 회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인다. 당신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부로 연락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706-600 대구 경북체신청 직영우체국 R.C.O Box 36호
Tel : 053-426-2533
Fax : 053-422-1956

한국의 사형실상을 알립시다.

당신의 친구, 직장동료, 가족에게 국제앰네스티의 자료를 배포하고 이야기 합시다.

국제앰네스티의 자료를 아파트 및 회사게시판에 부착합시다. 자신이 아는 기자와 언론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시다.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에게 항의 편지를 씁시다.

보낼 곳

김영삼대통령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
청와대
110-050

안우만 법무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100-798



앰네스티 간행물

• **인도네시아/동티모르 : 권력과 면책**
이 책자는 신질서하에서의 인권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책자에서 여러 유형의 인권침해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영문판, 약 126페이지, 가격 : 5,000원)

• **콜롬비아 : 정치적 폭력 - 신화와 현실**
이 책자는 1994년 3월 발간되었으며 콜롬비아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문판, 약 109페이지, 가격 : 5,000원)

• 수단 : 고아들의 눈물

이 책자는 1995년 2월에 발간된 것으로 수단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문판, 약 132페이지, 가격 : 5,000원)

• 국가가 살해 할 때

이 책자는 1989년 2월에 발간된 것으로 사형제도에 관한 제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전세계 국가별 사형제도 시행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영문판, 약 267페이지, 가격 : 15,000원)

•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회원에게는 소식지와 각종 인권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각종 모임과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후원회원 년 30,000원, B후원회원 년 60,000원, C후원회원 년 120,000원, D후원회원 연간 120,000원 이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국지부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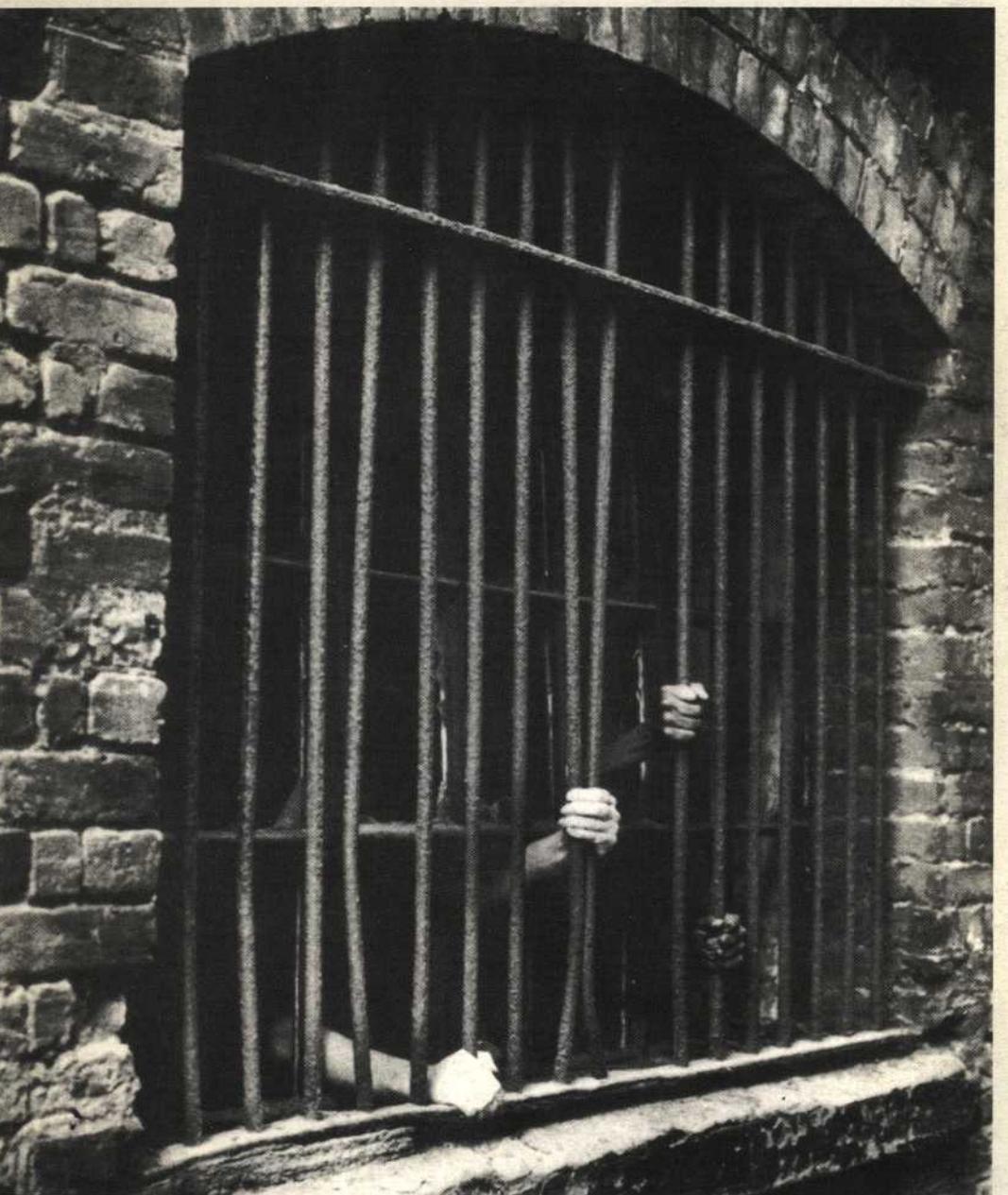
• 후원회원 이용구좌

한국외환은행 134-19-20628-2
제일은행 552-20-054048
우체국 703199-0029754
농협중앙회 703-02-191384
예금주 이주영

회원 자료실
B3 21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

II



앰네스티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회원에게는 소식지와 각종 인권자료를 보내드리며, 각종 모임과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비는 월 2천5백원, 5천원, 만원, 만원이상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053-426-2533

한국외환은행 134-18-19341-1

예금주: 앰네스티

늘푸른평화를 후원해 주십시오

「늘푸른평화」쪽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후원을 받아서 매달 만들어 집니다.
이 쪽지를 받아보기를 원하거나 후원금을 보내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문의: 053-641-1678

우체국 703140-0078169-12

예금주: 늘푸른평화

死刑은 제도적 殺人行爲

김정우신부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신학부

1764년 세계 최초로 사형폐지를 위한 저서 “범죄와 형벌에 대하여”를 남긴 법률가 체사레 베카리아(Cessare Beccaria)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존재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사형이 형벌이 아닌 인간안에 내재한 보복 본능의 발로이며, 그것을 법이라는 미명하에 시행하는 제도적인 살인 행위임을 일찍이 간파하였습니다. 베카리아 이후 2세기가 흐른 아직도 한 해 37개국에서 2,331명이 사형을 당하였고, 75개 국가에서 4,032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폭력과 범죄는 늘어만 갑니다. 결국 사형이 범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오히려 범죄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인 가치관과 극단적 이기주의로 물들어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경쟁 논리만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으며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죽일 수 있다는 법이 있는 한, 그 사회는 인간 생명의 존중이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형제도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법조인 그리고 종교인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선입관,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탈리오식 보복관행은 악순환과 죽음의 문화만을 낳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3세기 교부 성 이레네오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는 인간생명의 존엄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임태에서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밝히는 우리 시대의 빛이요, 등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

목 차

권두언: 사형은 제도적 살인행위 / 김정우신부	2	사형제도관련 수치와 실제	28
한국 현대사에서 본 사형제도 운용의 실태 / 이상욱	3	세계 사형제도 시행현황	30
사형제도의 오늘날의 문제점 / 김정우	12	제2회 생명문화 공모전 수상작	32
사형은 마약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17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제도	23	사형없는 세상을 향하여 Ⅱ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	27	발행일: 1996년 10월 25일	
		발행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늘푸른평화	

한국 현대사에서 본 사형제도 운용의 실태

이상욱^(주)

서론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사형제도는 보복심리 내지 응보의 논리에 터잡아 이미 고대사회에서부터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의 형벌권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처분할 권한이 국가에게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둘러싼 제반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18세기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아래 사형제도 폐지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래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의는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다. 즉 주로 형벌의 위하력과 중범죄의 억지효과를 강조하며 국민감정이나 정의관념을 거론하거나 심지어 살인범을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한다는 것은 국가경비의 남용이라는 행형경비상의 문제까지 논거로 제시하는 사형존치론의 입장과 형벌의 교육형 목적과 인도주의적 견지를 기초로 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오페의 가능성까지 지적하는 사형폐지론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터이다.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각국의 입법태도도 사형제도를 예찬하여 남용된 경우도 없지 않았으며 그 반대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전자에 속한 국가로서 전체주의, 권위주의적 견지에서 사형을 남용하였던 나치하의 독일과 파시즘하의 이탈리아를 쉽게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대세가 기운 듯하며, 최근 1981년에는 오랜 논란 끝에 프랑스가 사형을 폐지하였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프랑스의 사형집행방법은 1792년 이래 무려 190년간을 프랑스 특유의 길로틴·루이 16세와 그의 왕비를 처형하여 더욱 유명해진-에 의한 참수를 고집함으로써 비인도적인 사형집행방법으로 지적되어왔으나 이제 그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이다.

물론 사형폐지법

(1981년 10월 9일, 법률 제908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길로틴에 의한 사형집행방법 대신에 보다 온건한 방법(가스살, 독약살)으로 대체하자는 수정안을 위시하여 흥악(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잔학한 살인, 미성년자 유괴살인, 인질살인, 대량살인 등) 및 공무집행중인 경찰, 행정관계자에 대한 살해, 살인의 누범 등에 대하여는 사형을 존치하여야만 한다는 수정안과 일정한 기간 동안(3년안과 5년안) 잠정적으로 사형의 적용을 정지하자는 수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사형폐지를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동법 제1조에 사형제도 그 자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사형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게 된 이유의 핵심은 범죄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생명을 박탈할 수 없는 권리(생명권)를 향유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있다. 이 생명권의 사상은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 유래하여 1966년 국제연합인권협약 B협약에도 명시되었던 것이다. 또한 1971년의 국제연합총회결의(2857 - X X IV)를 위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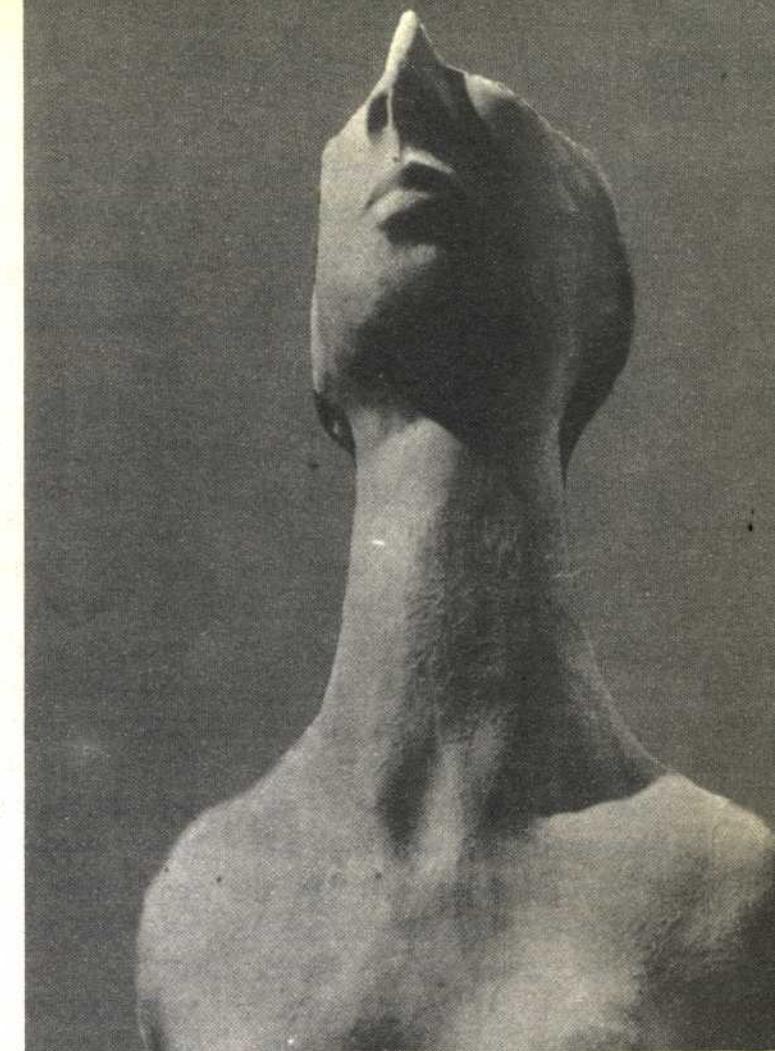
1980년 유럽의회결의(6월 1일) 등 각종 국제문서는 생명권을 기초로 사형을 비인도적인 형벌로 간주하여 그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프랑스 의회에서 사형폐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은 지적되었으며 특히 정부제출법안 이우서는 사형을 폐지하는 이유로서 사형은 인간의 본질에 기인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형벌로서 문명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음을 친명하고 있다. 즉 사형은 사회가 그 국민의 이름으로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사회에 그와 같은 절대적 권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는 1981년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이제 시작을 우리나라로 돌려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폐지론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에 앞서 먼저 현행 법상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의 방만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

(주)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을 수 없다.

갑오개혁과 더불어 서구의 근대적인 법제도를 수용하게 된 이래 근대법 이론상의 편찬형식을 채택한 〈형법대전〉이 1905년에 제정되면서 사형제도를 채용하여 입법화하였으나, 사형집행방식으로서 종래 실시되었던 참형등의 방법을 모두 폐기하고 교형만을 두었다(〈형법대전〉 제94조). 그러나 이미 당시에도 사형제도 폐지의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설득한 일련의 주장이 있어서 주목된다.

1906년경에 법관양성소의 교관으로서 형법을 강의하였던 “장도”는 그의 저서 〈형법총론〉(1907)에서 사형존치론과 폐지론의 논리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pp. 302-14). 그는 결론적으로 효과면에서 종신형으로서 사형을 대신할 수도 있고 사형이라는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범인의 악의 폐행에 보복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으로 봐도 능사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론도 일리가 있으며, 또 서양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도 많지만 동양의 역사와 현상을 회고할 진대 양민의 신체와 재산, 국가의 생존을 보유하기 위하여 사형제도가 적합한 제도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대전〉의 초안에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 끝으로 사형을 폐지한 구미각국의 국명을 소개하고 있다.

또 “김익성”은 보성전문학교에서 법학 전문학술지도로 발간한 〈법정학계〉(1907년 창간)에 “절대적 불치죄인에게 사형을 포함이 가할까”라는 논문을 통하여 절대적 불치의 죄인이 혼존한다고 하여도 경솔하게 사형을 과하여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후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을 맞아 현행 형법이 제정될 때에는 별다른 저항없이 사형을 규정하였다. 이제 아래에서는 사형폐지론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이 아니라, 해방 후 한국의 현대사를 통하여 과연 사형제도는 어떻게 운용되었으며 그 실태가 어떠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혹인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사형이 편파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보고된 바 있듯이 사형제도의 운용에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의적인 경향과 오판의 불가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무엇보다도 정

치적 후진국에서는 사형이 정치범에 대하여 악용되고 있다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방후 법령의 변천과정에 따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내용

형법

1945년 해방후 실시된 미군정하에서는 군정법령 제21호(1945년 11월 1일) 제1조에 의하여 일제시대의 일본형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다. 다만 한국인을 차별대우하는 법령은 폐지하였다.(군정법령 제11호 1945년 10월 9일)

그러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형법에서 벗어나 우리의 형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시급한 여망에 따라 이미 군정시대부터 형법의 입법작업은 시작되었으나 해방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황망중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53년 9월 18일 공포(법률 제293호), 그해 10월 3일부터 시행된 것이 현행형법이다.

이제 형법상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일제시대의 형법, 이른바 구형법의 관련조문을 부기하여 상호비교함으로써 사형에 대한 당시의 입법관을 가늠해보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침설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된다.

-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이하 생략

*구형법(일제시대의 형법) 제77조 정부를 전복하거나 또는 방토를 참절하고 기타 조현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자는 내란의 죄로 죄의 구별에 따라 처단함.

- 1)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금고에 처함
- 2) 모의에 참여하거나 군집의 지휘를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

에 처하고 기타 제반 직무에 종사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금고에 처함.

2. 제88조(내란 목적의 살인)

국토를 침설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3.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구형법 제81조

외국과 통모하여 제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적국과 더불어 제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함

4.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함.

5. 제94조(모병이적)

1)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생략

6. 제95조(시설제공이적)

1)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형의 형과 같다.

*구형법 제82조

1) 요새, 진영, 군대, 선박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2)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을 적국에 교부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7. 제96조(시설파괴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구형법 제83조

적국을 이용해 하기 위하여 요새, 진영, 함선, 병기, 탄약, 기차, 전차, 철도, 전선 기타 군용에 공하는 장소 또는 물을 손괴하거나 사용함이 불능에 이

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8. 제98조(간첩)

1)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형의 형과 같다.

*구형법 제85조

1) 적국을 위하여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혹은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함.

2)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역시 동.

9. 제119조(폭발물 사용)

1)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2) 전쟁, 기타 사변에서 전형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10.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개를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구형법 제108조

불을 놓아 현재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또는 사람의 현재하는 건조물, 기차, 함선, 혹은 광개를 소훼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함.

11. 제177조(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개를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구형법 제20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15. 제338조(강도살인, 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구형법 제240조

1) 강도가 사람을 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함.

2) 치사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함.

16. 제340조(해상강도)

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12.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전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하 생략

3)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치사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볼 때, 현행 형법상의 사형규정은 일제시대의 일본형법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의 일본형법, 즉 일제시대의 형법은 이른바 신형법으로서 구형법(1882년 명치15년 1월 1일)이 19세기 프랑스를 풍미했던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사상에 기초를 둔 것이었던 데 비해, 이 신형법은 독일의 형법이론의 영향을 받아 당시 일본이 근대자본주의의 산물인 범죄가 격증한다는 데 기인해 주관주의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방위의 사상이 강조된 것으로 1908년(명치4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물론 현행 형법전의 입법화 작업이 해방 후의 혼란기에 착수하여 6.25의 전란기에 종결되었다는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보더라도 우리의 형법이 입법 당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폭넓게 충분히 검토되어 제정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현행 형법은 일제시대의 형법보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법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방 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와중에서 일제시대의 형법을 폐기하고 하루빨리 우리의 형법전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시급한 요청에 부응하여 형법제정 당시에 앞으로 야기될 현대사회의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상들과 변화를 제대로 직시하거나 예측하지 못하고, 일제시대의 형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탄생한 것이 현행 형법전이었다. 따라서 형법의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시행 후에 노정된 여러가지 형법전의 미비점을 보완

하는 방법으로서 근본적인 형법개정작업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많은 특별법이 쏟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 와서는 현행형법의 상당한 부분은 거의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되어버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형량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사형이 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5호)은 집단적 폭력이나 상습적인 폭력 또는 야간에 자행되는 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형법상의 상해와 폭행의 죄(형법 제257조 이하)보다 가중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은 글자 그대로 특정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가중하라는 법률로서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보면 뇌물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뒤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였으나 대통령 긴급조치로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적으로 광범위하게 설치하여 이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고 사형이 집행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해방후 법령의 제정연대순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명을 자세하게 정리해보기로 한다.

■ 국가보안법

(1960년 6월 10일. 법률 제549호)

1. 제1조(반국가단체구성)

정부를 침침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이하 반국가단체라고 칭한다)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조(군사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각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3. 제3조(일반목적수행)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
(1)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이나 누설 또는 폭발물사용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살인, 방화, 일수나 통화의 위조, 동행사의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반공법

(1961년 7월 3일. 법률 제643호)

1. 제6조(탈출, 잠입)

1)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한 자가 지체없이 수사, 정보기관에 자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000만 환 상당 이상의 물품을 허가없이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과 그 물품의 원가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3. 제4조(국사 또는 군사에 관한 독직)

1) 국무위원 이상의 직위 또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여 그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간부의 직에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재물 기타 이익을 취하거나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기타자에 대하여 협박,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도 같다.

2) 전향에 규정된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여 그 죄상이 현저히 중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이하 생략

4. 제5조(반혁명행위)

1) 5-16 군사쿠데타 수행과정에서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에 관하여 고의로 정보를 누설하거나 혁명행위를 방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5.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7조(단체적 폭력행위)

1)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여 상습적으로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손괴 또는 권리행사방해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 또는 주도적 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3조(특수밀수)

단체를 조직하거나 상습적으로 총액

(2) 생략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1961년 6월 20일. 법률 제625호)

1. 제4조(단체등의 조직)

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1961년 7월 1일. 법률 제640호)

1. 제3조의 2(혁명과업수행방해)

혁명과업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87조(내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92조 내지 제99조(외환유치, 여적, 모병이적, 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간첩, 일반이적), 제107호(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제115조(소요), 제119조 제1항 및 제2항(폭발물 사용), 제164조 내지 제167조(현주건주물 등에의 방화, 일반물건에의 방화), 제172조(폭발물파열), 제250조(살인) 및 국가보안법 제1조 또는 제3조의 죄에 착수한 자와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하거나 그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제3조의 4

1) 외국환관리법 중 제21조 내지 제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목적물을 몰수한다. 단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에는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제21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가액이 10만 달러 이상일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하 생략(1962. 1. 6. 본조신설)

3. 제4조(도망죄에 대한 가중례)

국방경비법 제9조 내지 제11조, 해안

경비법 제8조 제6호, 제11조 제21호, 제2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

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생략

2)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뇌물을 공여 또는 약속한 자가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인 때에는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생략(1973. 2. 24. 본조신설)

5. 제5조의 4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1) 생략.

2)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생략(1973. 2. 24. 본조신설)

5. 제5조의 4

(상습강,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1) 2) 생략
3) 상습으로 형법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제340조 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5) 생략(1980.12.18. 본조신설)

6. 제5조의 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형법 제337조, 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5) 생략(1980.12.18. 본조신설)

7. 제5조의 6(단체 등의 조직)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3) 생략(1980. 12. 18. 본조신설)

8. 제6조(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 관세법 제17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생략(1980. 12. 18. 본조개정)

2)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포탈한 세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생략(1980. 12. 18. 본조개정)

3) 생략

4) 관세법 제18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한 물품의 원가(이하 본조에서 "물품원가"라 한다)가 5,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생략(1980. 12. 18. 본조개정)

5) 6) 생략

7)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68. 7. 15. 본항신설)

9. 제9조(산림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 산림법 제116조, 제118조, 제12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산물의 원산지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개간면적이 5만 평방 미터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생략.

10. 제11조(마약사범의 가중처벌)

1)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마약법 제61조, 제6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

중처벌한다.

(1) 소지, 재배, 사용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가액"이라 한다)이 5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생략(1980. 12. 18. 본조개정)

11.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생략(1980. 12. 18. 본조개정)

■ 보전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년 8월 4일. 법률 제2137호)

1. 제2조(부정식품제조 등의 처벌)

1)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 및 3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자, 이

미 허가된 식품 또는 첨가물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점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동법 제6조,

제7조 제4항의 각주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그 점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80. 12. 31, 1986. 5. 10)

(1) 식품 또는 첨가물의 가액이 소매 가격으로 연간 500만 원 이상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 12. 31)

2) 생략.

3. 제3조의 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신설 1980. 12. 31)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

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동 또는 통신 기타

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연락, 그 구성원의

집복, 회합,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

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의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

한다.

하여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한 자, 그 점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 허가된 의약품 또는 화장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 그 점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및 판매를 알선한 자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만 원 이상되거나 의약품 또는 화장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또는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검정의 약품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효능 또는 함량이 현저히 부족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생략.

(3) 제1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1980. 12. 31)

2) 생략.

3. 제3조의 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신설 1980. 12. 31)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

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동 또는 통신 기타

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연락, 그 구성원의

집복, 회합,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

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의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

한다.

2) 생략.

3. 제3조의 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신설 1980. 12. 31)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

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동 또는 통신 기타

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연락, 그 구성원의

집복, 회합,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

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의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

한다.

2) 생략.

3. 제3조의 2(재범자의 특수가중)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신설 1980. 12. 31)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생략.

5.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관계자 지도 감독자의 정상적 수업,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7. 생략.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하 생략)

■ 국가보안법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

1.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1)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 생략)

2. 제4조(목적수행)

1)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생략.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 제147조, 제1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1항, 제252조, 제253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제339조 또는 제340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 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 생략)

3. 제6조(잠입, 탈출)

1) 생략.

2)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기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국외공간계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이하 생략)

4.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 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 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3호)
1.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2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2,00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생략.

이상으로 다소 장황하나마 특별법에 규정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정리하여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방만함과 지나치게 중벌주의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벌백계식의 중벌을 규정한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또는 기왕의 조문에 사형 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벌을 가중시키는 개정작업이 단행된 시기가 주로 1960, 1961, 1974, 1980년 등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형제도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음을 엿볼수 있게 한다.

사형이 선고된 범죄의 유형

먼저 사법연감의 통계를 중심으로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죄명과 인원수를 정리해보면 <표1>과 같다.

이처럼 1960년부터 1987년까지 제1심에서의 사형선고 현황을 정리한 <표1>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사형이 선고된 대상범죄별로 보아 살인죄(42.5%)가 단연 으뜸이고 강도 살인치사(28%),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2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형이 선고된 인원수를 연도별

로 보면 1960, 1961, 1970, 1971, 1972, 1975, 1976, 1980, 1981, 1982년 등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중벌주의의 위주로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작업이 단행된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이 역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즉 역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들어선 정부가 그 기반을 다지고 나름대로

<표1> 제1심 형사공판사건 사형선고 죄명과 인원

죄명 연도	형법				특별법							
	내란 합계	외환 의죄	살인 의죄	정조 예관 한죄	강도 상해 치상	강도 살인 치사	강도 강간	국가 보안 법	반공법 법	특정범 죄가중 처벌법	폭력행 위등 처벌법	백 분율
1960	38											5.3
1961	38											5.3
1962	7											1
1963	20											2.8
1964	24	2	13		8		1					3.4
1965	21		11		4		3	3				3
1966	13		4		4		5					1.8
1967	27	3	7	1	9		6	1				3.8
1968	25		2	8	4	1	10					3.5
1969	25		5		5		10	5				3.5
1970	37		16	1	13		7					5.2
1971	45	2	12		7		11	13				6.3
1972	39		10		15		13	1				5.5
1973	24		10		10		2	2				3.4
1974	27	1	10		8		7	1				3.8
1975	33		14		10		8	1				4.6
1976	32		13		10		5		4			4.5
1977	14		6		5		1	2				2
1978	17		8		8			1				2.4
1979	18		12		3		1	2				2.5
1980	32		16		10		2	3	1			4.5
1981	33		23		4	1	1		1			4.6
1982	35		12		12	2	5		4			5
1983	19		6		4		4		5			2.7
1984	18		14	1	1	1	1					2.5
1985	25		16		7		1		1			3.5
1986	8		6		1		1					1.1
1987	18		7		9	1			1			2.5
백분율	712	0.2	2.0	42.5	0.3	0.2	28	1	17.1	5.6	2.9	0.2
												100

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의 하나로서, 또한 그렇게 성립된 체제유지적 차원에서 범죄 없는 사회건설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거나 사회악을 추방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정치적 슬로건으로 제시함으로서 중벌주의를 표방하고 형벌권을 강화하여 결국 극형으로까지 치닫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일반적으로 사형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사실면에서의 확실성과 사형을 과함이 적절하다는 사회적, 정치적, 윤리적 확실성이 요청된다고 한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서 한국 현대사에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된 경우를 가늠해본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강요된 진술, 즉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는 항변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더욱 그러하다. 또 특수했던 우리의 정치

적, 사회적 제반상황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6·25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한강교를 폭파한 사건으로 총살형이 선고되어 집행되었던 최창식 대령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14년후인 1964년 10월 23일 육군보통군법회의 최대령이 한강교를 폭파한 것은 당시의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박탈된 생명은 회복할 길이 없다는 데 사형제도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던 사건 중 비교적 어두웠던 시대와 관련된 주요사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 1958년의 이른바 전보당사건으로 조봉암, 양명산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사건.
- 2) 1960년 4·19 운동 후의 특별재판소의

운영과 5·16 정변으로 인한 중단도 간과할 수 없다.

3) 1976년의 동백림사건.

4) 1974년의 민청학련사건.

특히 1974년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는 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겨냥한 것 이었으며, 그해 7월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64년의 인혁당 사건을 다시 거론 그 관계 피고인 7명과 민청학련사건 관계자 7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인혁당사건 관계자 7명 그대로와 민청학련 관계 피고인 1명에게 사형확정판결을 내리자, 바로 그 다음날인 4월 9일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던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문과 조작설을 폭로하고 항의한 조지 오글 목사와 제임스 시노트 신부가 추방되기도 하였다.

5)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내란죄 등을 적용, 5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1981년 4월 1일 대법원에서 최종 3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을 확정하였으나 이틀 뒤인 4월 3일 무기로 감형되었던 사실.

6) 1982년에는 부산 미국문화원사건으로 2명의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1983년 3월 상고가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그해 3월 15일 특사로 감형되었던 사건.

맺는 말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다른 어떠한 법익과의 비교형량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도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언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며,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도 무겁고, 또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1967. 9. 19. 대판 66 도 988)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형사정책으로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형법, 군형법 등에 사형이라는 형벌을 규정하였다 하여도 이것을 헌법에 위반되는 조문이라 할 수 없다”(1963. 2. 28. 대판 241)고 판시함으로서 사형을 합헌이라고 하였다. 최근에 또 다시 사형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라고 하여 위헌여부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두고 있다.

대법원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 태양, 범행의 수단, 잔학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적 예방의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987. 10. 13. 대판 87도 1240)라고 하였으며, 또 이른바 가정파괴 범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형으로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시대가 나치하에 있는 것도 아닐 진대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때 국가안보, 질서유지 등의 명분을 내세워 통행금지제도를 둔 적이 있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해제되기만 하면 온 세상이 범죄로 들끓을 것이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막상 통행금지가 해제되었으나 그 때문에 범죄가 급작스럽게 증가되었다는 통계분석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 역시 하나의 제도상의 문제일 뿐이다. 폐지하면 그냥 그 뿐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흉악범이 설치고 각종 대형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발상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범죄의 예방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이지 흉악범을 극형으로 억제할 수 없음은 이미 여러가지 측면에서 입증된 바 있다. 또 인간의 궁극적인 생명을 박탈하지 않고 다른 형벌(종신형)로서도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형벌의 적용과 집행의 정확성 내지 확실성에 있는 것이지 결코 엄벌 위주의 극형만이 능사가 아님은 자명한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때, 사형의 선고와 집행이 일관성 있는 법가치관에 따라 단행된 것이

라고 전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데 더욱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방후 고하 송진우 선생, 백범 김구 선생, 운산 장덕수 선생, 동양 여운형 선생 등의 살해범에게는 무기형이 선고되어 끝내는 특사, 감형으로 출감하게 되었는데 반하여,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고문, 조작 등의 술한 논란과 의혹을 둘러싼 그 많은 사형선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악의가 증가하면 형벌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중벌주의적 형벌은 보복적이고 위하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전근대적인 사상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제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이란 사회가 그 국민의 이름으로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그와 같은 절대적 권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일 뿐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사형제도의 오늘날의 문제점¹⁾

김정우²⁾

사형제도의 비인간성

오늘날 사형제도는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형의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비인간성을 들 수 있다. 사형은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사형이 범죄율을 줄이고 정치적 권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증거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곳이라면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서 사형이 집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사형은 종종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사형은 여러가지로 자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드물게는 무죄가 명확한 데도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사형제도의 채택을 고집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사형은 살인자를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곳에서는 약물사범, 정치적 테러, 경제사범 혹은 간통죄와 같은 죄를 막기 위하여 사형제도를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사형은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반대자를 차단하는데도 이용되기도 한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경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나 아직 그 속도가 충분하게 빠르지 못하다.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집행하는 사형은 모든 이를 불행하게 한다. 따라서 각자는 사형이 무엇을 의미하며 사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사형이 무엇때문에 그것과 관계 있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도움으로 오늘날 사형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래 전부터 사형은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해 왔다. 인간적인 과실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규에서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을 정의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 12월 10일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사형은 종종 민족·종족·정치적 그룹과 정치적 반대자 혹은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형은 일종의 폭력행위이다. 사형이라는 형벌과 그 집행은 그 방법에서 사람을 모독하고 있다. 사형이 특별히 범죄를 예방한다는 확증은 없다. 사형은 폐지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무고한 이들을 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사형에 관한 교회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모든 이론적이고도 실제적인 관점은 아래처럼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또 결정적으로 반대는 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미국 주교단은 모든 힘을 다하여 임신중 절과 안락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하고 생명을 수호하는 일에 힘써 왔다. 따라서 내적 논리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생명은 신성하다는 확신을 주었으며,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며 그것이 사형폐지에

까지 이르도록 했다.

인종차별과 사형

이러한 공포적이며 최종적인 형벌이 무방비의 사람들, 즉 가난한이 정신장애자 또는 인종적 종교적 윤리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즉 사회의 비특권층에 대해 이러한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 대다수는 사회의 하위계층에 속하고 있으며 만일 상류층에 속해 있다면 사형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형벌체계에 무방비적으로 던져져 있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은 이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회지도층의 편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특권계층에 속해 있을 때 그들에 대한 범행자는 다른 이들 보다 더 빈번하게 사형에 처해진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내 인종차별과 사형선고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미국의 여러 조사단들은 희생자가 백인일 때는 흑인일 때보다 범인은 5배 이상 더 빈번하게 사형에 처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백인은 가택침입이나 강도 등과 같은 범행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살인에 있어서의 이러한 경향때문에 대부분의 범인들은 사형에 처해진다. 평균적으로 더 빈곤하고 실직률이 높은 흑인들은 이에 비해 사형에 처해질 만한 살인범죄의 희생물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여러 연구들은 피부색이 사형선고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학자인 사무엘 그로스와 로버트 모로는 1976년에서 1980년 사이 아칸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그리고 버지니아 등의 연방도시에 생긴 희생자들의 피부색에 대한 보고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백인에 대한 살인은 흑인에 대한 살인보다 9배정도 더 사형에 의해 처벌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사형은 거의 전적으로 백인으로 구성된 상원이 흑인들과 유색 인종들에게 편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사형심리가 전개되고 있는 법원에 배석한 배심원들은 거의 언제나 백인들이다. 만일 피해자가 백인이고 그를 살해한 자가 흑인일 때, 사형언도는 거의 확실하였다.

따라서 1982년 6월부터 1983년 6월 사이에 백인살해자로 기소된 81명의 흑인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38명이 사형을 당했다. 이와 반대로 백인을 죽인 52명의 백인중에서 단지 한명만 사형을 당했다. 흑인을 죽인 백인은 전혀 처형되지 않은 반면에, 같은 피부색의 사람을 죽인 2,208명의 흑인중 55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더욱이 남아공화국의 흑인 범죄자들은 변호사를 세울 엄두도 못낼 만큼 가난하다. 공판과정에서 법정은 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그렇지만 이로써 더욱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데, 관선변호사로는 주로 변호사협회에서 초보자들이 추천되며, 이들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보다 열등한 변호사였다.

중범죄로 고발된 흑인들 대부분의 빈곤한 처지는 극히 불리한 처지를 만들어 내

며, 그럼으로써 아주 가혹한 징역에 처해지게 한다.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은,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혐집행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만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있다. 여기서 보면 법률용어는 영어나 아프리카어인데 남아프리카의 흑인들은 이 두 가지 말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통역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이로써 종종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자마이카에서 1979년 제정된 사형과 형벌제정에 관한 위원회는 당시 사형이 구형된 81명의 죄수들 중 4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하류계층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삶에 처해 있었으며, 더욱이 불규칙적인 생활과 교육의 부재 속에서 지내왔다. 이들 중 1/4은 문맹이었다. 대부분은 경험 없는 변호사가 선임되는데, 이들은 이제 막 연수를 마친 상태의 변호사들이었다. 그래서 사형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을, 즉 비특권적이고 문맹이며, 인종적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몫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두피는 이렇게 적고 있다.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의 교육수준은 일반죄수들 보다 낮으며 외부의 일반시민들에 비하면 더욱 낮다.”

부유한 사람들은 좀더 나은 변호받을 수 있었으며, 좋은 변호사를 사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고, 그들이 저지른 범행은 사소한 일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가난은 죄악이다’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부자라면 그는 무죄이고, 만일 가난하다면 그는 유죄인 것이다.

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사형판결은 최종적인 것이고 따라서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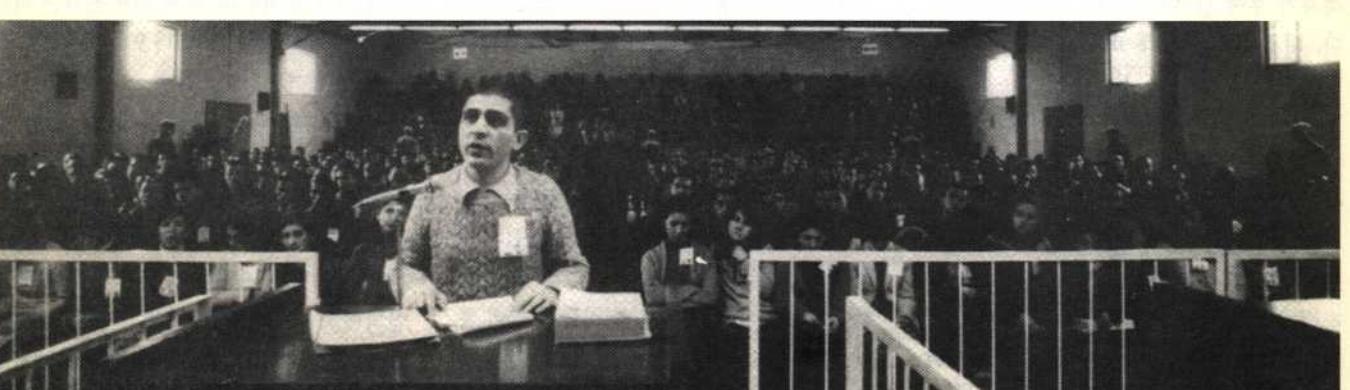
록 소송을 통한 조치가 있을지라도 무죄한 이들에게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주목할 만한 주장이 대두된다. 사형제도는 처벌의 남용이며, 사람은 결코 완전무결할 수 없고 이상적인 완전한 정의는 불가능하며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처벌의 남용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단지 사형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차별에 의한 것인가? 차별의 것인가? 사형제도를 내리게 하는 인간적 경향은 범죄자를 불공정하게 사형에 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형을 경감하기 위한 증거자료나 수사당국의 조사가 결핍된 상황에서 무능력한 예비검사는 피고인을 엉뚱하게 죄인으로 만드는데, 일단 상급법원이 새로운 증거의 숨인을 기각하고 해당사건에 대해 결정적인 판결을 내리고 나면 이를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유죄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단 죄수가 죽은 후에 그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루어져 판결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지는 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오직 사형제도의 폐지가 확실해 질 때만 이러한 과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무고한 이가 유죄로 판결된 349건의 실례에 대한 짧막하고 명확한 연구는 사형제도에 관계된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다. 이 연구는 1900년에서 1985년 사이의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살인때문에 사형당하거나



약 750명의 피고인들로 꽉찬 터키의 법정. 이들은 죄의 활동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중 8명은 1988년 8월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주요 증거는 고문으로 얻어진 “자백”이었다.

1) 이 글은 1996년 6월 20일 효성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에서 발간한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신학적 변론]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2) 김정우 신부는 서울가톨릭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비인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윤리신학을 공부하여 1992년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윤리신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역서: 사제독신제와 오늘(1994), 저서: 죽음의 이해(1995)



1985년 나이지리아의 10명에 대한 공개사형집행 광경.

나 형무소에 보내진 이들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형판결은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무죄판결이나 사면이 주어졌는데 종종 형이 집행된 후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3명의 무죄한 이들은 처형되고 말았다.

재판상의 오류를 명확히 한 몇몇 경우는 항소심의 후반기에 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오류들은 우연히 또는 신문보도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32건의 경우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예 있지도 않았으며 종종 피해자가 후에 살아있는 채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른 경우에는 범행을 다른 사람이 행했고, 알리바이는 진실이었음이 드러나거나 증인이 거짓말장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1970년 아래로 약 50건의 재판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1987년 4월 영국하원에서 있었던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에서 두번의 임기에 걸쳐 내각에서 사형판결의 변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이 젠킨스 전 내무장관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나는 사형판결을 받았던 10번의 경우에 대해 조사해 봐야 했는

데, 이들 경우에서 정작 유죄라고 단정하기에 의혹이 많았으며 많은 경우는 판결의 오류였다.” 모든 수감자가 처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처형되었으며, 1965년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처형되었을 것이다.” 로이 젠킨스는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판단에 있어서 인간능력의 취약성은 나에게는 갈수록 명확해 지는데 사형제도와 같은 최종적 조치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한예로 1982년 2월 타이완에서, 1973년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74세의 창-노차이어는 타이완의 최고법정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판명되었다. 사실 그는 범행을 인정했었는데, 그가 한 자백의 일부는 사실과 대치되었으며 조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첫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이 사건은 열한번에 걸쳐 심의되었는데, 결국 그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지난 10년동안 여러 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이가 무죄로 석방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로인해 법원은 재판의 오류에 의한 희생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낙인을 받게 되었다. 자주 이러한 오류는 오랫동안의 수고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교정되며, 많은 경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사형의 자의적 적용

사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문제는 재판상의 오류와의 관계에서 살펴져야 한다. 사형은 결코 추상적 주제가 아니다. 사형의 적용이 확정됨에 의해서 한 사람의 삶이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 인간적 오류나 성급한 판단에서 면제되지 못하는 법정에서의 사형선고는 정의에 의거하기보다는 화를 초

래하는 결과를 불가피하게 안고 있다. 처벌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결정적인 것은, (범인은) 사형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위협을 당하느냐는 것이다. 살인은 전통적으로 죽어야 마땅한 중한 죄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 200년간의 역사나 다른 여러 나라들의 법률을 일별해 보면 살인과 단순한 고의적 살해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며 전혀 충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명확한 경계도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범죄가 사형이 부과될 만한 범죄인가하고 자문하게 되는데, 보통 모반이나 국가에 대한 다른 반역죄 또는 항공기 납치나 언질극 같은 예가 될 것이다. 사회는 이들에 대해 사형판결을 내려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결정은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인 그러나 감지할 수 없는 순간에 의해 이루어 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형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한 전혀 다른 방식의 인정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에 대한 접근은 다분히 자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어떤 사람에 대해 실제적이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누군가 법에 따라 사형언도를 받으면 실제적으로 처형당하게 된다. 사형으로 종결되는 모든 형사심리에서 그리고 사면의 가능성에 대두되는 상황에서, 그 합리성은 파악되지도 않을뿐더러 조절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개개인의 경우에서 지적해 볼 수 있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피고인의 운명은 그 사건에 있어서 어느 재판관이 재량권을 가지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사형에 대한 모든 통계와 실례들은 언제나 사형언도를 받은 일부만이 실제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사면조치는 비합리적인 여러 동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감정, 뚜렷하게 드러난 동향 그리고 그 시대적 제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삶과 죽음이 이러한 상황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또 다른 실례를 보여준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판결은 상당한 정도의 법적 신뢰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대한 결정이 미국에서는 이전에 널리 그래왔듯이 앞세대의 방식에 의거하는 국가 공권력의 우위에 속박되어 있다. 특정한 경우에서 사형이 요

구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국가 공권력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중죄로 인해 고소될 경우에 비해 실제 실행되는 경우는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사형언도에 대한 결정은 어느 특정한 사건의 상황과 무관한 여러 요소, 말하자면 재정적인 면, 사회적 압력, 피부색, 범인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범행장소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이미 1930년 프랑스의 한 관리인 라파에트는 당국에 대해 다음과의 말과 함께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었다. “나는 인간이 하는 판단의 무오류성이 증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현대에 여러 나라에서는 사형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특히 무자비하고, 비인적이며 파렴치한 사형의 성격 때문이다. 사형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포스러우며 비인간적인 것이다. 선고를 받은 이는 사형이 집행되기 오래 전부터 삶에 대한 상념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는 날까지 괴로움을 당한다.

항소법원에서 그는 한편에선 삶의 의지와 희망, 다른 한편에선 자신에게 곧 죽음이 도래하리라는 좌절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죽음에 대한 불안은 극에 달한다. 많은 경우에 사형의 언도는 굉장히 고통을 의미한다. 사형언도에 따른 고통과 불안의 많은 부분은 판결자체에서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것들이다. 사형언도를 받은 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포감과 고통은 오랫동안의 격리와 그리고 다른 여가가지 삶의 권리의 박탈로 인해 더욱 강렬해진다. 오랫동안의 격리와 외로움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이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갈등은 감금되어 있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항소절차를 포기하게 하고 자살의 한 방법으로 사형집행을 속히 실행해 주기를 요구하게 만든다.

미국의 연방도시인 알라바마에서 1987년 35명의 사형예정자들을 상대로 상세한 보고서를 만든 한 범죄학자는, 이들이 사형에 대한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스스로 자제할 수 있을까, 쓰려져 버리지는 않을까, 전기충격이 고통을

주지는 않을까, 또한 사형이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 일으킬까 등을 자문하였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몇몇은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리는데, 여기서 그들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 형을 받았다. 몇몇은 형이 집행되기 전 오랫동안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이 상태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악화를 통해서 드러나듯, 심한 우울, 무감정, 현실감 상실 등을 통해 나타났다.

트리니다 토바고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수감자를 상담했던 한 심리학자는 “오랫동안 그러한 제약 속에서의 구금상태는 우울이나 행복감 같은 심리적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좁은 공간에의 구금상태는 격리에 의한 공포나 종종 만성적인 불안이나 우울증을 초래한다. 구금자는 무관심해지고 삶의 의지를 잊어버린다. 작은 방에서의 감금 상태와 밤에도 불을 밝혀 놓는 환경은 분명 정신적인 고문이 되고 있다”라고 그의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도 여러 가지의 비인간적이고 공포적인 판결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통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누군가가 범행을 했다고 해서 정의라는 명목아래 그에게 과다한 고통을 부과하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처벌이 되지 못하고 다만 보복이 될 뿐이다. 형식적인 법 해석의 결과가 가공할 만한 사형의 선고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이들, 즉 사형제도의 응호자들

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공할 사형의 선고를 포기함은 짐짓 과장된 인간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된다. 사형언도를 받은 당사자는 그와 반대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별로 써 그러한 형을 언도받은 것이지만, 오히려 더욱 공포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은 기대할 수도 없다.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사형방법과 사형의식이다. 사형이란 심리적 고문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보통 일곱가지의 사형방법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 교수형과 총살이 보편적이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78개의 국가에서는 교수형이, 86개의 국가에서는 총살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같이 쓰이는 곳에서는 총살은 보통 전쟁시의 범행이나 군사재판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사형집행에 사용되는 가스실. 1992년 4월

살은 보통 전쟁시의 범행이나 군사재판에서의 사형판결 때 쓰인다. 각 주마다 각기 다른 사형방법을 지닌 미국에서는 사형집행에 있어서 전기의자나 가스실 그리고 치사물질의 정맥내 주입과 같은 방법이 사용된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다섯 나라에서는 참수로 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일곱 나라에서는 간음죄에 대해 돌로 쳐죽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이런 방법들은 다만 몇몇 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콩고나 벨기에 같은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단두대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사용한 예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방법들을 만들어 내는가? 이러한 방법들은 어디에 필요한가? 정의를 위해서 아니면 범죄를 최종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음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1988년 1월 18일 10년 만에 다시 사형제도가 부활되었다. 신문에 인용된 교도소 관리의 진술에 따르면 1988년 2월에 있었던 한 사형집행 때는 만명의 시민과 백명의 경찰이 참석했었다. 1988년 3월 12일자 Dawn신문은 이렇게 적고 있다. “이러한 광경은 순진한 주민들에게 야만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처형방법이 처벌의 목적 이 될 수 있는가는 무척 의심스럽다. 더욱 이 정부는 사회에 끼칠 장기간의 영향에 대해선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행위의 허용은 국가에 대해 광폭스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

나찌체제의 독일에서는 대략 18,000명이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되었다. 2차대전 이후 50년대가 시작되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토의를 하는 와중에 독일정부는 사형집행 인을 모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 사실은 사형집행에 대해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에게 다른 인간을 처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는 인간의 생명에 표해야

할 무조건적 존경이라는 계명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자의성이나 차별 또는 오류가 없는 사형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무자비하지 않고 비인간적이지도 않으며 비열하지도 않은 사형방법을 찾아낸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오늘날 사형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대부분 이들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데 있다. 그래서 지난 수십년간 사형제도는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사형제도가 있는 이상 이는 독재자나 독재적 체제에 의해 악용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역사의 시초부터 있던 일로서 이에 대한 경악할 만한 예는 익히 들어온 바이다. 그러나 일단 사형제도의 폐지가 국제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노예제도의 폐지와 같이 전체적인 운동이 되었고 따라서 사형제도의 악용에 빗장을 지를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적들은 사형에 처해지고 반대자들을 사형으로 위협하는 많은 독재자들에 대해 침묵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사형제도는 또한 쿠데타를 통해 얻은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쓰인다. 정치적 반대 그룹의 일원들은 정치적 목적 이 될 수 있는가는 무척 의심스럽다. 더욱 이 정부는 사회에 끼칠 장기간의 영향에 대해선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행위의 허용은 국가에 대해 광폭스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



쿠데타혐의로 체포되어 24시간만에 사형집행된 28명의 군장성. 1990년 4월. 수단.

군사 쿠데타 이후 종종 이전 체제의 동조자들이나 의혹이 가는 반란자들에게 집행된다. 지난 10여년동안 이런 형태의 사형집행이 최소한 14개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이 과정은 대단한 열성과 공정한 재판이라는 허위아래 이루어 졌다.

이러한 살인은 더이상 합법성의 외관을 두를 수 없다. 독재자들은 스스로가 세계여론에 의해 배척되고 있으며, 정의롭지 못한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살인은 살인을 놓을 뿐이며, 이들은 더 이상 정의로운 행위라는 표상을 드러낼 수 없다. 사형제도가 더이상 실행되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법률가들은 사형이 여전히 하나의 위협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여러해 동안 사형제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19세기 중반 이래로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헌법이나 법률을 제정할 때 사형제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미국 인권협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사형이 정치적 다툼이나 범죄와의 연계에 사용되도록 방지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1981년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국제적 모임인 “코트디브아르”도 사형이 정치적 동기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는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써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사형은 마약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¹⁾

약물남용과 마약불법거래는 세계적으로 큰 문제거리가 되어 왔다. 1985년 케이트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마약이 어디에서 생산되고 또 어디에 이용되는지에 상관없이 불법약물은 사회구조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악화시킨다.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약물남용은 소중한 인명을 파괴하고 있다... 약물남용으로 고생하는 개인만이 그 희생자가 아니다. 불법약물과 범죄는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은 범죄를 잠재적으로 유도하며, 마약불법거래는 종종 뇌물, 절도, 공무원 부패와 심지어 살인 등을 포함한 다른 범죄와 결탁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마약불법거래가 많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약물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수십억달러 상당의 비용으로 계산되어 질 수 있는데, 이는 작업장에 투자되어야 할 시간의 낭비와 사법 형법 체계에 부과되는 실질적인 부담 그리고 약물중독자 생생 프로그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추정하여 계산한 것이다.”²⁾

이러한 약물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약 26개의 국가에서는 약물관련 범죄를 사형제도에 의해 처벌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³⁾ 이 중 7개국은 사형제도의 적용범위를 줄이고자 하는 유엔의 노력과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경향에 반하여 1986년부터 이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⁴⁾ 약

물관련 죄목으로 형을 선고받은 수천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부과하는 이론적 근거는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에 비해 마약거래자들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천건의 사형집행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가 마약밀매와 남용문제를 완화시키는데 어떤 괄목할 만한 효과를 미쳤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현재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사형제도를 도입하여 집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볼 때,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적용이나 그 위험성으로 인해 마약거래가 감소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형제도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직면한 불법거래들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더 쉽게 살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증가한다.⁵⁾ 조직범죄자들이 체포와 처벌을 피하는 것과는 달리 소규모 불법거래자나 심지어 약물복용자들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형벌의 가혹함이 마약 가격의 인상을 가져오고 이는 조직범죄단이 마약에 손을 대고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더욱 심각한 범죄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마약밀매에 맞서기 위해 사형제도를 성급히 도입한 국가들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제적 규준들을 무시하고 있는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는 사형제도의 본질적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다.

사형제도가 특정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사형제도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이지리아는 몇 차례의 사형집행으로 전국적인 거센 항의가 있은 후 1986년에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터키는 1990년에 마약밀매에 대한 사형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사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의 수를 총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냈다. 1992년 모리티우스에서는 1986년 마약밀매와 관련하여 도입된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있어 사형제도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며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 있어 사형제도의 적용을 유보하고 세계 모든 곳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사실들과 의견들이 정부로 하여금 마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무용성과 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제앰네스티는

1)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The Death Penalty: No solution to illicit drugs (AI Index: ACT 51/02/95)]. 이 보고서에 대한 초판은 같은 제목으로 1986년 John V. Owens의 도움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에 실린 글은 Tanya Hector의 도움으로 1995년 10월에 발간된 것으로, 특히 1993년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의 사형제도팀이 실시한 조사작업과 연구활동의 도움이 컸다.

2) 1985년 5월 24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문

3) 상술하자면 26개국은 다음과 같다.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중국, 이집트,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대만,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베트남

4)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1987년, 방글라데시는 1988년, 가나와 수단은 1989년 그리고 베트남은 1992년도에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제도를 도입하였다. 필리핀은 1987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나, 1994년도에 마약사범을 비롯한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재도입하였다.

5) 1985년 11월 14일 테헤란 라디오는 파키스탄 국경 근처에서 발생한 마약밀수업자와의 충격전에서 지역 현병대소속 전투원 16명이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마약밀수업자들은 만약 불잡힐 경우 사형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직면하고 있었다. 1994년 까지 이란의 법집행공무원 2백명이 마약불법거래자들과의 전투에서 생명을 잃었다.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 증거일로에 있는 사형선고는 폭력사범과 마약불법거래자에게까지 부과된다. 사진은 마약퇴치 캠페인기간중 사형을 선과받고 있는 수인들의 모습이다.

더이상 사형집행이 없기를 희망하며, 사형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 보고서의 정보들은 사형제도의 폐지가 마약밀매와 남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에 전혀 해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국가들의 실패

사형제도의 도입: 논의의 부재

1970년대 말까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1971년 유엔총회는 국제인권규준에 명시되어 있는 생명권을 주장하면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희망하는 관점에서 사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수를 점진적으로 제한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총회는 1977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였다.⁶⁾

1970년대 이후 사형제도폐지에 대해 국

제적인 지지가 점차 증가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출범한 유엔인권위원회는 1982년 동협약의 제6조가 “사형제도의 폐지를 옹호하며 이를 강력히 제안하는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규정하였다.⁷⁾ 비사법적 또는 약식, 임의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사형제도의 적용범위는 절대 확장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으며,⁸⁾ 모든 정부들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⁹⁾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지지는 개별 국가들의 사형폐지 결정으로 가속되고 있다. 1976년이후 매년 평균 2개국 이상이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 점차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법률적 또

는 실재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이 사형제도에 대해 5년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보고서의 1995년도 판에는 “전례없이 많은 수의 국가들이 사형제도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이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⁰⁾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이러한 강한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다. 사

형제도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세계적 흐름에 대한 이러한 역행은 바로 새로운 형벌제도에 대한 국가별 토론이 부재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도는 그것이 많은 국가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정부들이 주장하여 온 인권규준을 침해한다는 입장에 대한 진지한 토론없이 마약범죄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어 왔다.

심도있는 토론의 부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실은 억제효과의 문제이다.¹¹⁾ 마약과의 전쟁에서 효과적인 무기로서 사형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경우는 그것이 마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처벌수단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마약불법거래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많은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는 테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다른 범죄에 대해서 고유한 억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의 부족은 마약문제에 있어서도 회의를 낳을 수 밖에 없다.¹²⁾ 국가별 토론의 장에서 “억제효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용되는 신뢰할 만한 범죄학적 증거들은 거의 없다.¹³⁾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 적용영역에 대한 국가별 차이

나라에 따라 사형을 부과하는 마약범죄의 규정에 있어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아편, 몰핀, 헤로인과 같이 아편성분을 포함하는 약물을 밀매하는 행위로 사형제도의 처벌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코카인이나 화학약물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 어떤 나라의 수인들은 마리화나를 밀매했다는 혐의로 사형에 처해지지만 다른 나라에서 마리화나의 사용은 경범죄 내지는 심지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기도 한다.¹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자국으로 마약을 밀매하는 사람은 약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해진다는 법조항을 가지고 있다.

국제인권규준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적용 범위만이라도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국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⁵⁾ 일부 국가의 법률은 약물의 최소량을 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마약밀매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경우에만 사형을 부과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적용범위가 극도로 광범위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마약소지에 대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마약 불법거래뿐 아니라 중독자까지 사형집행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적어도 한개의 국가, 스리랑카에서는 개인이 헤로인 2그램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법률에 따라 사형집행될 수 있다. 비록 그 양이 심한 마약중독자가 단지 하루동안 소비할 수 있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가별 사형을 부과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법규정의 차이는 사형제도의 실제 적용

에 있어서는 더욱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사형제도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한명도 사형 집행되지 않았다. 법률상 마약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명시한 국가중 11개국이 그러하다. 사형집행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이란과 중국이다.¹⁶⁾ 이들 두 나라는 약물관련 범죄로 천명 이상을 처형하였으며 이들 두 나라에서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있어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 이들 두나라에서 사형집행은 종종 광범위한 마약퇴치캠페인의 일환으로 혹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행된다. 이란에서는 마약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사형제도의 적용을 명시한 새 법률이 제정



1979년8월 이란에서 약식재판후 총살단에 의해 처형되는 쿠르드인 9명과 2명의 전 경찰관.

6) 1977년 12월 8일 유엔총회 결의안 32/61은 “사형제도에 있어서 인정되어야 할 주요목표는 이 형벌을 폐지하는 것이 가치있다는 관점에서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의 수를 발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재확인하였다.

7) 1982년 7월 27일 유엔인권위원회 제378차 회의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8) 비사법적 양식 또는 임의 처형: 특별보고관 보고서. 유엔 문서번호 ECN.4/1995/61, 1994년 12월 14일, 375번째 문단

9) 1995년도 유엔인권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법이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장치들이 단지 제한규정을 통해 사형제도를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때 사형을 부과할 권리 또한 부여하고 있지 않다. 생명권의 박탈은 돌이킬 수 없다는 측면에서, 사법적 오류에 대한 보상과 모든 의심에 대한 해명의 불가능성이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분야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별보고관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정부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재고하고 사형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10) 사형수 권리보호를 위한 사형과 수감에 대한 안전지침: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유엔 문서번호 E/1995/78, 1995년 7월 8일, 87번째 문단

11)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6차 유엔회의에 제출된 활동보고서에서 유엔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전의 많은 조사노력들을 통해 사형제도의 범죄억제효과를 결론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효력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없다... 사형제도가 가진 억제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해 대중들을 교육하는 것은 정부들과 학계, 언론 그리고 기타 기구들의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제6차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 제출된 [사형제도: 사무국 활동보고서]. 유엔문서번호 A/CONF.87/9, 1980년 6월 23일, 68번째 문단

12) 1988년 유엔으로 위임받아 행해진, 사형제도와 살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세계적인 통계는 이 조사는 “사형집행이 종신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를 발견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한 증거는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억제효과가 설득적으로 지지할 만한 증거는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사형제도: 세계적 조명], 로저 후드, 1989, 167쪽

13) 한 유엔전문가는 마약범죄에 있어 사형제도가 가진 억제효과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에서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다음의 여섯가지를 나열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학적 연구의 매우 정교한 법칙을 대충 훑어 본 후 사형제도가 불법 마약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그러한 정교한 법칙들을 검토하지 않고서도 단지 사형제도가 살인률에 별다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억제효과가 불법 마약거래의 경우는 발견될 것이라는 가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범죄에 대한 유엔의 입장], 슬라보미르 레도, 유엔 극동아시아기구

14) 최소 12개 국가가 마리화나나 하시쉬를 불법거래한데 대해서 명백히 사형을 부과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는 바레인, 브루나이, 이란,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카타르, 싱가포르, 수단, 대만, 미국이 포함된다. 그리고 최소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마리화나와 하시쉬 불법거래로 구속된 수인들을 처형해 왔다.

15)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나라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 사형을 부과하여야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2항. 1984년 5월 25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984/50으로 채택되고 1984년 12월 14일 투표없이 채택되어 유엔총회 결의안 39/118로 통과된, 사형수 권리보호를 위한 안전지침에 의하면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국가들에 있어서 사형제도는 오직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부과되어야 하며, 그 적용범위가 치명적이고 극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국제적 범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안전지침 1) 마약범죄가 “가장 심각한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1995년 7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스리랑카의 3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인권위원회는 동협약에 따라 “스리랑카의 법률을 볼때, 사형제도는 자살교사나 마약관련 사법 및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 부과된다. 이러한 범죄자들중 일부는 동협약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원회의 평가: 스리랑카], 유엔인권위원회, 유엔 문서번호 CCPR/C/79/Add.56, 1995년 7월 27일

된 후, 1989년 한해동안 1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형집행되었다. 1991년부터 중국은 6월 26일 유엔선포 마약퇴치의 날을 매년 사형집행의 날로 이용하고 있다.

불공정한 재판과

무고한 사람에 대한 처형의 위험

여러 국제규준들은 사형을 부과함에 있어 신중한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¹⁷⁾ 하지만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을 도입하기 위한 성급함으로 일부 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국제규준에 미달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마약소지가 마약밀매의 증거로 간주된다고 규정하는 일부 법조문들로 인해 만약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무죄추정의 가능성은 희박해 진다.¹⁸⁾

일부 나라에서는 마약범죄 혐의자의 경우 특별법원이나 특별소송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전지침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의 경우, 법원은 1983년 도입된 제도에 의거 일부 형사사건의 심리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에게 기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며, 사건 당사자들에게 소환이나 재판에 관한 통고를 미리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새로 도입된 이 제도는 항소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이란의 경우, 형사사범들은 변호인의 변론이나 항소를 할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한 채 약식 재판후 처형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혐의자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보호 절차가 부재한 속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된다.

16) 국제앰네스티는 1979년 이슬람공화국 설립이래로 이란에서 2천9백명이상이 마약범죄로 집행되었고, 그 이전 정부에서 수백명의 수인들이 집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마약범죄로 1천1백명이상이 처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1975년이래 말레이시아에서는 마약범죄로 200명이상의 수인들이 처형되었고, 싱가포르에서는 1975년이래 최소 1백명이 사형집행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87년 사형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1백명 이상이 사형집행되었다. 기타 살인자를 포함하여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집행을 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집트, 인도네시아, 수단, 대만, 베트남, 시리아 등이다.

17)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규준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의 제9조, 14조, 15조에 명시되어 있다. 1980년 12월 15일 투표없이 채택된 결의안 35/172에서 유엔총회는 유엔회원국들이 “ICCPR의 제9조, 14조, 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 규준을 존중하고, 더하여 필수적으로 국내법의 내용과 실재가 사형이 부과된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절차와 안전지침을 보장하기 위해 재고” 할 것을 권고하였다.

18) 싱가포르의 규정은 “극히 소량의 물관이나 혜로인을 소지하고 있는 자라고 밝혀지거나 추정되는 사람은 누구나, 반증이 나오지 않는 한, 그 점에서 밀무역을 위해 마약을 소지한 사람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마약의 밀무역은 사형에 처해진다.” 이 규정은 또한 “금지된 마약이 차량에서 발견된다면, 반증이 나오지 않는 한, 그 차의 소유주 또는 당시 그 차에 책임있는 사람의 것으로 추정한다”고 쓰여 있다.

어떤 사법체계이든, 그것이 아무리 세심한 절차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형은 한번 시행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후에 무죄가 밝혀 지더라도 죽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어 버린다면, 무고한 사람이 사형집행될 가능성은 그 만큼 더 커진다. 비록 범죄사실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많은 수인들이 마약범죄로 집행되어 왔다.

1985년 6월, 말레이시아의 마니암 마누사미는 혜로인을 소지한 혐의로 인도네시아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마약을 밀반입했음을 인정했고, 호텔에서 같이 머물렀던 말레이시아인 찬팅총이라는 장사꾼에게서 돈을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찬은 관련혐의를 부인했으나 사형을 선고받았다. 찬은 항소를 했으나 1986년 4월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1986년 8월, 마니암 마누사미는 찬이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자신이 체포되기 몇일 전 공항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으며 본의 아니게 그를 사건에 연루시켰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찬 사건을 재검토할 것과 그에 대한 형을 취하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전했다.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1990년 찬의 상고는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으며, 1991년 수하르토 대통령은 그의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5년 1월 13일 찬은 총살되었다.

1994년 4월 24일, 이집트에서는 10명의 외국인이 마약밀수 혐의로 사형집행되었다. 이들은 1988년 아편을 운반하는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당시 체포되었다. 그 배의 선장인 수단인은 사형집행 전 기자들에게

“나는 그 배에 뭐가 실려 있었는지 몰랐다”며 그 배의 주인을 비난했다. 그 배의 선원 역시 자신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온 근로자 하심 테스칸다는 1993년 4월 30일 마약소지혐의로 사형집행되었다. 경찰은 대마초가 든 가방을 그의 차에서 발견했으며, 가방의 열쇠가 하심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를 기소했다. 그는 그 열쇠를 다른 탑승객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 탑승객들도 처음에는 그와 같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후에 그들은 석방되었으며, 재판을 받을 때도 그들은 중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고, 하심의 변호인은 그들과 면담할 기회도 가지지 못했다.

1986년 말레이시아의 대법원은 마약밀매 사건과 관련해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사형판결 중 최소한 4건을 취하했다. 3명의 수인이 석방되었는데, 그 이유는 검찰측의 증거가 불확실하고 입증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한번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사형판결이 대법원에서 5년형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이유는 부정확한 저울을 사용한 수사를 믿을 수 없으며, 증거로 내세운 마약의 양이 사형을 선고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¹⁹⁾

많은 국가에서 대부분의 마약범죄에 대해 선택적으로 사형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2개 국가에서는 최소 일부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있다. 의무조항으로서의 사형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법적 근거로 맹공을 당하고 있다. 즉 의무화된 사형제도는 각 사건의 처한 상황에 따라

라 형벌의 과도함을 회피시키기 위해 판사의 판단을 제거함으로써 법률적 절차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현재 최소 2개 국가에서 의무화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철폐하였다.

고유한 억제효과라는 증거의 부족

마약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논거는 곧 잠재적인 마약불법거래자들을 억제함으로써 마약과의 전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범죄억지 효과에 대한 증거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약범죄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한 나라에서 명백히 사형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유용성으로부터 불법마약거래가 쇠퇴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알지 못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약범죄 수사기관들은 사형제도가 도입된 1987년이래 마약관련범죄가 50%정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약범죄로 인한 사형집행건수가 1993년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당국에서는 처벌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박하면서 반대로 마약범죄의 증가로 돌린다.

1979년 이슬람혁명이래로 이란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 사람만도 2천9백명이 넘지만, 1994년도 국제마약통제이사회 보고에 의하면 여전히 이란내의 불법거래루트는 아프리카와 파키스탄으로부터 유럽의 시장으로 혜로인을 운반하는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마약생산지인 황금의 삼각지대 일원에서 불법마약거래자 수백명을 공개처형했다. 그러나 황금의 삼각지대로부터 혜로인을 운반하기 위한 중국내 주요 운반로개척이 마약관련범죄의 증가를 결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1975년이래 마약범죄로 2백명이상



1983년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무죄의 논란속에서 사형집행된 이브라힘 타라프

이 처형된 말레이시아에서도 혜로인이용도의 증가는 마약수요증가에 기인한다는 보고가 있다.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에 관한 논쟁 기사에서 캐나다 사이몬 프레이저대학의 범죄학 교수 에자 파타는 1952년 아편과 하시쉬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강제노동부 무기형제도를 도입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견사로서 담당했던 사건의 경험을 인용하고 있다.

“새로운 마약법의 성과는 엄밀히 말해서 입법자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마약거래자들은 구속을 피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묘안들을 고안해냈다. 마약단속 관리들의 업무수행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었다. 밀수업자들과 불법마약거래업자들은 체포와 구금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폭력을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폭력을 활동방식으로 삼게 되었다. 신법하에서 불법마약거래의 감소는 고사하고 경찰에 의한 사소한 사건목인의 증가로 이어졌을 뿐이다. 판사들은 많은 사건에서 실형선고를 몹시 주저

하게 됐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또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를 구실로 무죄를 선고했다. 게다가 마약거래위험의 증가와 함께 마약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불법마약시장에 새로운 자극요인이 되기 시작했다. 즉 새로운 마약법은 이집트에서의 마약범죄상황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 모로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가혹한 처벌이 결코 범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듯이, 마약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형제도는 마약에 대한 유일한 억지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많은 기관들로부터 지적되어 왔다. 1985년 1월, 말레이지아의 현직 경찰수사국장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마약거래를 억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1986년 2월 말레이시아의 내무차관에 따르면 사형집행에도 불구하고 마약거래는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억지책으로서의 사형제도의 뚜렷한 결함은 1985년 12월 육로와 해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전문가그룹회의에서도 지적되었다. 회의보고서에 따르면,

“… 여러 전문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정법에 규정된 사형이 마약거래를 억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형이 가능한 또는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사건에서는 대체로 법원이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소가 오히려 어려운 측면도 있다. … 가장 효과적인 억제는 범죄발견과 체포의 확실성에 있는 것이다.”

외국인에 대한 사형

마약거래의 국제적인 특징은 외국인이

19) Sidney L. Haring의 저서인 “사형, 마약 그리고 발전: 마약에 관한 국제전쟁과 밀무역꾼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위탁된 사형제도”,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29, pp.365-405, 1991년을 참조하라.

유죄선고를 받고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부가적인 곤란한 상황을 야기한다. 외국인의 경우 재판국의 법률을 잘 알고 있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며, 부적절한 통역으로 인해 기소내용을 이해하고 재판절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모국정부로서는 자국의 국민보호를 원할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의 관용을 요청한다 해도 관련국의 사법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외국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국가의 정부 또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만약 사형이 집행된다면 사형수의 모국과의 관계에 손상을 가져올 위험이 있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중잣대의 적용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1975년이래 적어도 25개국 사람들이 마약거래혐의로 외국에서 사형에 처해졌다.²⁰⁾ 몇몇 사형집행은 큰 분란을 야기시켰고 국가간의 외교관계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또 하나의 국제적인 문제점은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사형조항을 두고 있는 당사국에 혐의자를 인도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사형폐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종종 범죄자의자들을 사형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인도하지 않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²¹⁾

마약과의 전쟁

각국 정부들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광범위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즉 마약원료재배의 완전근절과 기존경작자들의 대체수입원제공, 밀수 수사장비 개선, 비밀마약제조공장의 파괴와 선적화물의 압수, 불법획득한 상품몰수, 마약남용방지교육, 마약중독자 치료와 재활 등이 그것이다.

세계적으로도 1985년 유엔사무총장이 요청한 불법마약근절을 위한 “국제적 임무”에의 참여도가 높다. 동시에 마약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의 다양성이 필요하며 손쉬운 해결책이란 없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마약거래는 광범위하게 불법마약의 수요를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문제는 좀 더 복잡해진다. 사회적으로 비난되어지기는 커녕 수백만의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마약이 오용되고 있다. 암스테르담대학 교수 프리츠 르터의 1986년 발표논문에 따르면 형법으로써 마약을 근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염두에는 시도에 다름아니라는 것이다. “마약불법거래자 체포는 거의 효과가 없는데, 마약거래조직의 두목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할뿐더러 소규모거래상들은 신속하게 대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강제로써는 마약거래를 방지할 수 없다. 오히려 마약거래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국제적 시각

마약과의 전쟁에서는 당사국간 그리고 유엔을 통한 국가들간의 대규모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총회를 비롯한 각종 유엔회의에서도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어 왔다. 하지만 유엔은 마약거래와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사형제도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여도 해오지 않았다.

1987년 각료급국제회의가 유엔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987년 6월 17일에서 26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마약남용과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미래의 마약규제활동에 대한 종합적·다차원적 요강을 채택했다. 이 요강은 35개 표제하에 작업장에서의 통제와 교육을 통한 마약수요 감소, 중독자치료프로그램개선, 마약재배 경작에 사용되던 지역의 재개발과 수확물 제거를 통한 공급통제, 선적과 비행기에 대한 규제 및 국경감시의 강화로 주요 불법거래망 차단, 불법거래혐의자들에 대한 원활한 국가간 인도, 불법거래에 대한 벌금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소수의 참

가자들이 사형제도의 적용을 주장하였지만,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이나 요강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권고는 없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국제협약에는 세가지가 있다. 1961년 마약류금지에 관한 단일협약, 1971년 항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1988년 마약과 항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금지에 관한 협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들 협약은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마약류금지에 관한 단일협약의 처벌조항에서는 자유형에 특정된 내용만이 있을 뿐이다. 즉 제36조 1항에서 협약당사국은 마약불법거래에 대해 특히 자유형이나 기타 자유박탈적 형벌에 의한 중벌로써 충분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두 조약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

이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조항은 도입시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수천명이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가 마약거래 및 남용을 경감시키는 이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 특정국가에서는 사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제도의 효용성이 부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입증된 사실이 마약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고 있는 국가 및 그 도입을 검토중인 국가에서의 관련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에 대해 사형집행의 중지와 폐지를 요청한다.■

20)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출신국가 25개국은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차드,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요르단,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대만, 탄자니아, 타이, 터키, 영국, 예멘, 그 밖에도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페인, 스리랑카 출신 마약범죄자들도 외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21) 마약범죄인도에 관한 유엔보고서는 일정사례에서 사형제도의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범죄인인도를 요구하는 국가에서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이미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사형에 처형되는데 협조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한 범죄인인도거부의 이유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의 사형폐지가 인도주의적 고려와 공공정책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국의 법과 정책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범죄인인도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마약류금지에 관한 단일협약에서 범죄인인도의 거부는 인도를 거부한 국가에 관할권이 창설되는 것임을, 그럼에도 인도를 요청하는 국가에 대부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인도를 하지 않고서는 유죄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형을 받고 있는 수인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국의 학생들. 중국에서는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규모적인 사형이 선고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제도¹⁾

고를 받고 1986년 2월 27일 처형되었다. 국제앰네스티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그는 처형 당시 17세였다. 정부는 그가 적어도 18세였음을 주장했다.

이란

1979년 이슬람공화국 수립 이후, 수천명의 수인들이 즉결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만 18세이하의 소년범들 역시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별사례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생명권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에 대한 침해임을 천명한다.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만 18세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포함하여 사형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지지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 현황

국제앰네스티는 1985년부터 8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사형집행에 대해 보고받아 왔다. 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방글라데시

모하메드 셀림은 군사법원에서 사형선

나이지리아

18세인 매튜 아누는 1989년 2월 26일 다른 2명의 사형수와 함께 처형되었다. 그는 범행당시인 1987년 6월, 17세 또는 그 이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나이지리아법률은 17세이상의 수인에 대한 처형을 허용하고 있다.

파키스탄

1992년 11월 15일 편집지방에서 17세소년을 포함한 11명이 처형되었다. 1993년에는 12-13세 가량의 기독교인 사마트 마쉬가 두 사람의 성인과 함께 불경죄로 기소되었다. 이 중 성인남자 한 사람은 이슬람교도에 의해 살해되었고, 나머지는 1995년 2월 29일 두 명의 17세소년과 한 명의 16세소년이 처형되었음을 보고했다.

이라크

이라크에서도 만 18세이하의 소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다. 1987년 11월과 12월, 15세에서 17세에 이르는 다섯명의 쿠르드족 소년들이 26명의 쿠르드인들과 함께 즉결군사재판을 받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14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소년들도 같은 해 12월 30일에서 31일 사이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아라비아

1992년 즉결처형 및 임의처형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9월 2일 이슬람교도 사드크 말알라가 알 쿠리프 동부지역에서 참수형에 처해졌음을 보고하였다. 그는 17세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경죄와 관련, 기소된 후 사형을 선고받았다.

1) 미성년자와 사형제도: 1985년 이후 세계 사형집행현황 (AI Index : ACT 50\05\95)

예멘

13세 소년 나세르 무니르 나세르 알킬비는 1993년 7월 21일 다른 세명과 함께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다. 살인과 고속도로에서의 강도협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안의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예멘의 사형사건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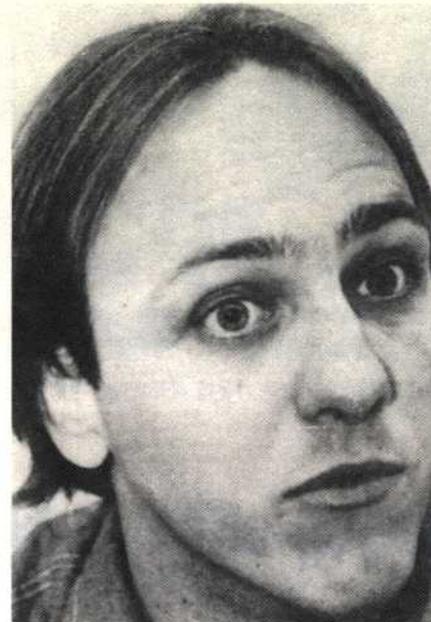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성년자 사형집행 사례가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1985년 이래 (이란,이라크처럼 숫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국가보다도 많은 미성년자들을 사형집행하였다. 1985년 이후 범행당시 소년인 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13개주에서 제기되어 왔다. 1985년 이래 5개주에서 9건의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모두 범행 당시 17세였다. 특히 텍사스주는 지난 십여년간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미성년자 5명도 포함되어 있다. 사형집행된 9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인들의 인종 또는 출신민족과 주는 팔호안에 표시되어 있다)

찰스 런버그(Charles Rumbaugh) [백인, 텍사스] 강도살인 범행당시 17세였다. 여섯살때부터 범죄를 시작하여 12살때에는 무장강도를 저질렀다. 1985년 9월 11일 유죄선고후 10년만에 약물주입에 의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미국에서 21년만에 처음있는 소년범에 대한 사형집행이었다.

제임스 테리 로취(James Terry Roach) [백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성인남자와 또다른 소년범과 두건의 살인죄를 범할 당시 17세였다. 그보다 어린 공범은 자백을 했다는 맷가로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로취와 다른 피고인은 유죄를 시인하고 모두 1977년 12월 범행후 단 6개월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로취는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조사대상이었던 공선변호인에 의해 변호를 받았다.

제이 핑커튼(Jay Pinkerton) [백인, 텍사스] 17세 당시 두건의 살인범행후 5년후인 1986년 5월 15일 약물주입에 의해 처형되었다.

조니 가렛(Johnny Garrett) [백인, 텍사스] 17세 때 76세의 간호사를 살해했다. 그는 오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하게 학대받아왔지만, 재



제임스 테리 로취

통령 지미 카터,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저명인사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1986년 1월 10일 처형되었다.

달튼 프리진(Dalton Prejean) [흑인, 루이지애나] 1977년 경관살해당시 17세였다. 프리진의 경우 전원 백인 배심원으로 구성된 재판에서 판선변호인의 변호로 지능장애의 증거가 제시되었다. 그의 지능지수는 71이었다. 그는 생후 2주만에 생모로부터 유기되어 폭력을 일삼는 친척에 의해 양육되었다. 13세부터 사회시설에 수용되었으며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병 증세를 보였다. 14세에는 택시기사 살해로 시설수용되었고, 의료적으로 엄격한 감시하에서의 장기 치료구금이 권고되었다. 하지만 치료시설의 재정부족으로 3년후 석방되었다. 1989년과 1990년의 사면호소에도 불구하고 1990년 5월 18일 사형선고후 12년 만에 전기의자형이 집행되었다.

제임스 테리 로취(James Terry Roach) [백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성인남자와 또다른 소년범과 두건의 살인죄를 범할 당시 17세였다. 그보다 어린 공범은 자백을 했다는 맷가로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로취와 다른 피고인은 유죄를 시인하고 모두 1977년 12월 범행후 단 6개월만에 사형을 선고받았다. 로취는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조사대상이었던 공선변호인에 의해 변호를 받았다.

제이 핑커튼(Jay Pinkerton) [백인, 텍사스] 17세 당시 두건의 살인범행후 5년후인 1986년 5월 15일 약물주입에 의해 처형되었다.

조니 가렛(Johnny Garrett) [백인, 텍사스] 17세 때 76세의 간호사를 살해했다. 그는 오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심하게 학대받아왔지만, 재

판에서는 이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다. 1986년에서 1992년 사이 세명의 의료전문가들의 진단결과, 그가 어린시절의 머리부상으로 인해 만성정신병과 뇌손상을 앓고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2세와 피살된 수녀가 속해있던 프랑스 수녀회의 탄원도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1992년 2월 11일 약물주입에 의해 처형되었다.

커티스 해리스(Curtis Harris) [흑인, 텍사스] 1978년 백인을 살해할 당시 17세였다. 그는 9명의 형제중 하나로 극심한 가난속에서 성장했고 알코올 중독자인 부친에게 자주 구타 당했다. 재판과정에서 흑인 배심원 세명이 배제되고, 모두 백인으로 배심원이 구성되어 사형이 선고되었다. 몇년후 뉴욕대 의대의 정신병리학 교수 도로시 루이스박사의 진찰에서 그는 지능지수 77에 어린시절 당한 학대로 말미암은 뇌손상이 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그의 성장과정이나 정신상태에 대한 어떠한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다. 항소가 기각되고 1993년 7월 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프레드릭 래슬리(Frederick Lashley) [흑인, 미주리] 범행당시 17세였으며, 미주리주에서 60년만에 처음으로 1993년 7월 28일 약물주입에 의해 처형되었다. 그는 1992년 모두 백인으로 배심이 구성된 재판에서 1991년 그의 사촌에 대한 살인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살인범행 당시 그는 약물중독상태였다. 그는 어린시절 모친에게 유기되어 친척에 의해 양육되었다. 10살때부터 심한 음주를 했으며, 범행당시에는 주거지도 없는 상태였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사형 사건을 한번도 다루어보지 않은 판선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다.

크리스토퍼 버거(Christopher Burger) [백인, 조지아] 현 조지아주 사형법에 의해 처음으로 처형된 소년범이다. 1977년 살인범행 당시 17세였으며, 1978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14년 후 전기의자에서 처형되었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사형사건을 한번도 다루어보지 않은 판선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다. 미국의 배심은 사형판결에서 감형 요소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의 변호사는 1978년과 1979년 선고공판에서 감형을 위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사형수들이 벽을 사이에 두고 체스를 하고 있다.

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배심원들은 베거의 낮은 지능지수와 어린 시절의 신체적 학대로 말미암은 뇌손상과 정신장애에 극도의 불안증세 그리고 15세때 그가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1989년, 뉴욕대 의대 정신병리학 교수 도로시 루이스박사는 진찰 결과 뇌손상과 정신장애가 있음을 밝혔다. 베거는 1990년 12월 18일 처형 예정이었으나, 범행당시 그의 정신능력에 대한 항소심리를 위해 집행이 연기되었다. 항소는 기각되고 1993년 12월 7일 사형 집행되었다.

루벤 칸투(Ruben Cantu) [이탈리아계, 텍사스] 범행당시 17세였다. 그는 경험없는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으며, 결손가정에서 양육되었고 지능지수도 상당히 낮았다. 1984년 살인죄로 유죄선고를 받고, 1993년 8월 24일 처형되었다.

이밖에 다른 36명과 함께 사형집행대기 중인 손 셀러스가 있다. 오클라호마출신으로 부모살해를 포함한 살인 범행당시 16세였다. 그가 범행당시 심신상실상태였다는 정신병관련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제출되었음에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1987년 3월 뉴욕대 의대 정신병리학 교수인 도로시 루이스의 진단결과 만성정신병자로 판명되었다.

몇몇 미성년자들은 여러 사람들의 탄원과 항소에 의해 형이 감형되기도 한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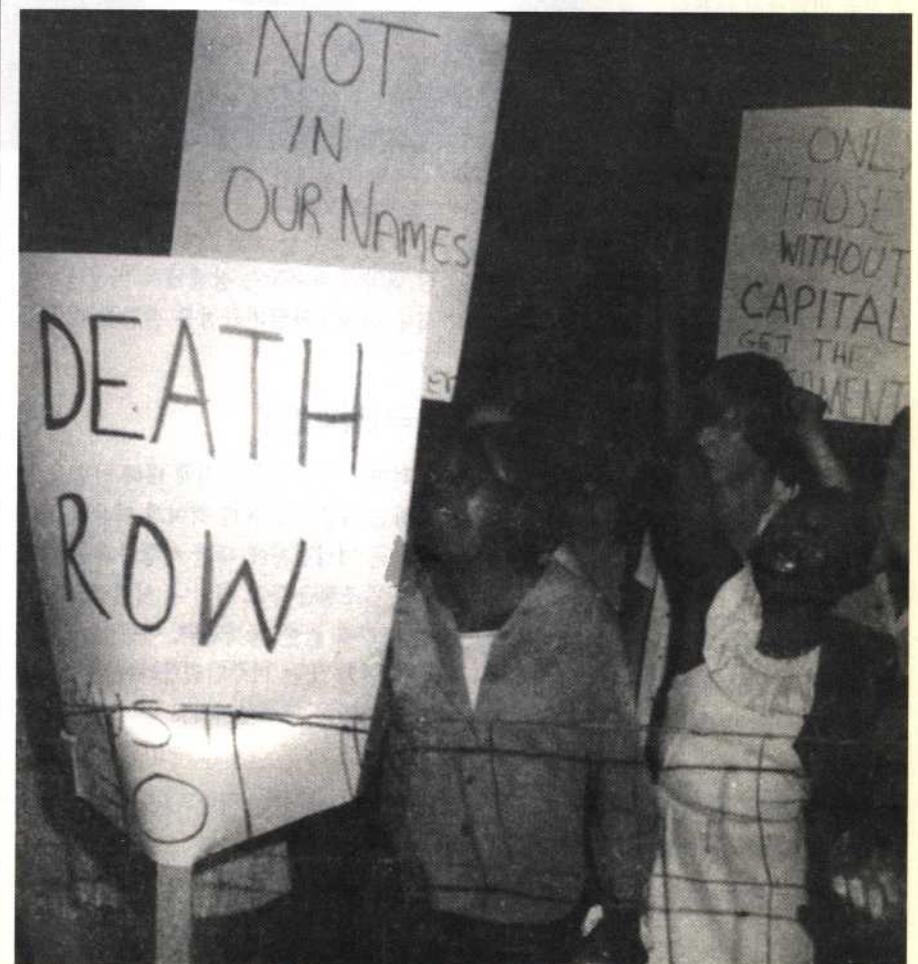
파울라 쿠퍼(Paula Cooper) [흑인, 인디애나] 살인범행 당시 15세였다. 이탈리아에 근거를 두고 벌어진 국제구명운동은 폴라

일부는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일부는 부실한 법적조력을 받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그들 변호인의 무능력으로 인해 재판에 제출되지 못했던 것이다.

국제규범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형은 수많은 국제조약에서 금지되어 있다. 주요협약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5항: 사형은 18세이하의 범죄자에 부



1979년 5월 미국에서 한 사형수의 집행에 대해 항의하는 캠페인 광경.

과되어서는 아니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37조 a항: 18세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과 가석방의 가능성없는 무기형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 미주인권협약 제4조 5항: 범행당시 18세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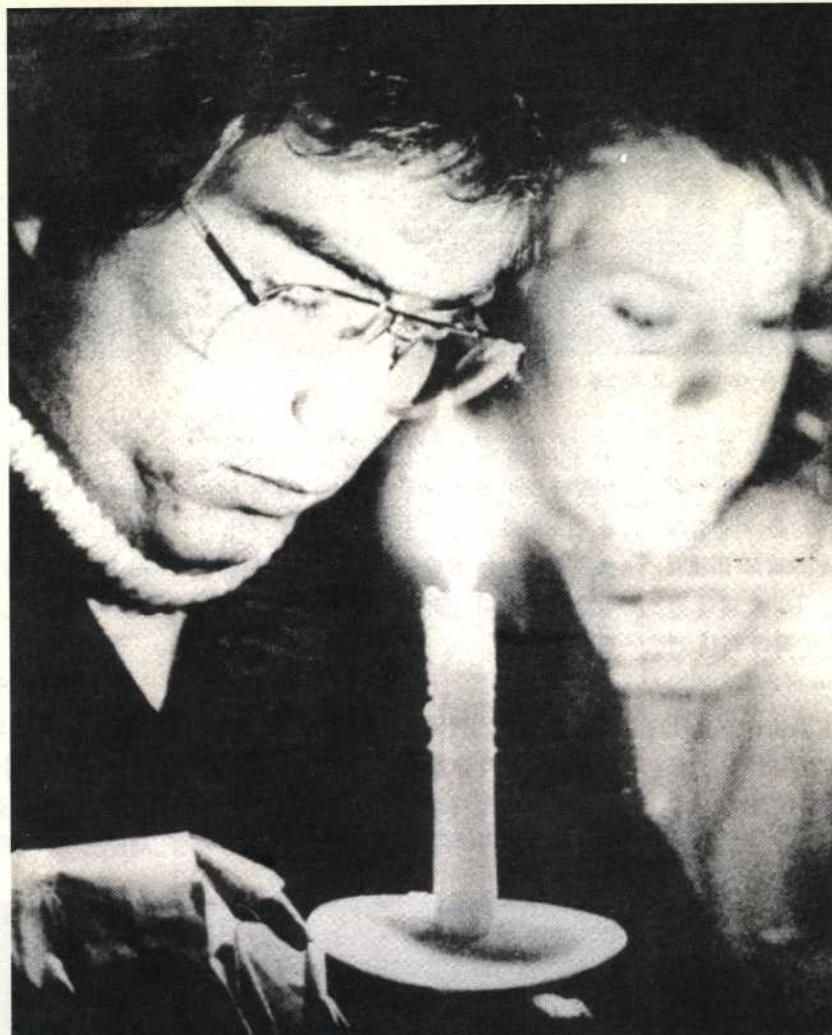
- 전시 민간인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1929년 8월 12일) 제 68조: 어떠한 경우에도 범행당시 18세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 1949년 제네바협약 제 1선택의정서(1977년) 제77조 5항: 무력분쟁과 관련된 범행당시 18세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 1949년 제네바협약 제 2선택의정서(1977년) 제6조 4항: 범행당시 18세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 사형수의 권리보장(유엔 경제사회이사회결의 1984/50. 1984년 5월 25일 채택되어 1984년 12월 14일 유엔총회결의 39/118로서 승인되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행당시 18세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위에서 본 여섯개 국제협약은 당사국 모두를 구속하는 규범이다. 유보조항없이 이들 협약의 당사국이 된 모든 국가는 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사형집행. 항의 캠페인 미국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 협약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부과금지규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²⁾

국내법과 관행

적어도 상당수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법률을 보유한 백여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부과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소수의 국가에서 여전히 소년범에 대한 사형이 행해지고 있지만, 드문 경우이며 매년 행해지는 전체 집행 건수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가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사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실정법 속에 사형제도가 존속되는 경우, 최소한 18세 제한규정은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입법되어야 할 것이다. ■

2) 1949년 제네바협약은 특히 국제무력분쟁시 점령지에서의 민간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협약 제1선택의정서도 국제무력분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선택의정서는 국내 무력분쟁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198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톰슨 대 오클라호마 사건에서 범행당시 16세이하의 소년범에 대한 사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4) 미국의 경우 1992년 6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했지만, 제6조 5항의 소년범에 대한 사형금지조항은 유보했다. 미국이 제출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최초보고서심의후, 유엔인권위원회는 1995년 4월 7일 미국의 동협약 제6조 5항에 대한 유보가 협약의 목표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동 유보조항의 철회를 권고하였다.(UN Document N0.CCPR/C/79/Add.50, 7 April 1995)

를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일부국가에서는 적어도 특정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부과를 허용하는 법률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 연령제한을 16-17세로 낮추고, 그보다 더 적은 연령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³⁾

이 보고서에 기술된 대로, 1985년이래 8개국에서 소년범에 대한 사형이 행해지고 있다. 이중 이란, 이라크, 예멘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면서 계속해서 미성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 집행하고 있다.⁴⁾

결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국제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대다수의

국가는 소년범에 대한 사형부과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소수의 국가에서 여전히 소년범에 대한 사형이 행해지고 있지만, 드문 경우이며 매년 행해지는 전체 집행 건수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가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사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실정법 속에 사형제도가 존속되는 경우, 최소한 18세 제한규정은 국제기준에 부합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가입국들은, 사형제도의 폐지가 인권의 진보적 발전과 인간 존엄성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신하며,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 제3조와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를 상기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가 사형제도의 폐지가 가치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을 향유함에 있어 발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며,

이로 말미암아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하나의 국제적 노력으로서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제1조

1. 어느 누구도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의 사법권하에서 사형집행되지 않아야 한다.

2. 모든 가입국들은 자신의 사법권하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의정서에서는 단지 전쟁기간동안 저질러진 군사적 성질의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전쟁기간중 사형제도를 적용한다는 유보조항을 가입과 절차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둘 수 있다.

2. 가입국들은 가입과 절차과정에서 전쟁기간동안 적용되는 자국의 적절한 법률조항에 관해 유엔 사무총장과 통보한다.

3. 이러한 유보조항을 둔 가입국들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신의 영토에서 전시상황이 시작됨과 종료됨에 관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이 의정서의 가입국들은 이 의정서에 근

거하여 자신들이 채택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40조에 부합하기 위해 자신들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가입국들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40조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한 가입국이 다른 가입국을 이 의정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접수하고 검토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한은 문제제기된 가입국이 가입과 절차과정에서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의정서의 조항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5조

가입국들이 1966년 12월 16일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선택의정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입국들의 사법권에 저촉된 개인의 주장을 접수하고 검토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한은 문제제기된 가입국이 가입과 절차과정에서 반대되는 주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의정서의 조항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6조

1. 이 의정서의 조항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추가되는 조항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보사항의 가능성에 대한 편견없이, 이 의정서의 제1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에 의해 어떠한 손상도 입지 않아야 한다.

제7조

1. 이 의정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한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2. 이 의정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해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될 것이다.

3. 이 의정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했거나 가입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5. 유엔 사무총장은 의정서에 서명했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비준 또는 가입절차를 끝난 국가에 대해서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이 의정서의 조항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0조

유엔사무총장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48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가입국들에게 특히 다음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a) 이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보사항, 통보사항 그리고 검토사항

(b) 이 의정서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주장

(c) 이 의정서 제7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d) 이 의정서 제8조에 의해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제11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된 것을 정본으로 하고 유엔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의정서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사형제도관련 수치와 실제

1996년 3월 31일 현재

사형폐지국 및 존치국 현황

세계 절반이상의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혹은 실제적으로 폐지하였다.

국제앰네스티의 가장 최근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 57개의 국가나 지역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폐지
- 15개 국가에서 전쟁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폐지
- 28개 국가에서 실제적으로 사형을 폐지: 이들 국가는 지난 10년간 단 한번의 사형집행도 없었다.

위와 같이 총 100개국에서 법적 혹은 실제로 사형을 폐지하였다.

- 94개국이 여전히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지만, 매년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수인들에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폐지를 위한 세계적 움직임

1976년 이후 세계에서 한해 평균 2개국 이상이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왔으며,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폐지하던 것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1989년 이래로 20개국 이상이 일반 범죄 혹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



1993년 6월 베이징의 사형집행장.

하였다. 이들 국가에는 아프리카(앙골라, 모리티우스, 모잠비크, 남아공화국 등), 라틴 아메리카(파라과이 등), 아시아(캄보디아, 홍콩 등), 남유럽(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 등), 서유럽(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태평양 연안(뉴질랜드) 등 세계 전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사형 재도입국 현황

한때 사형을 폐지하였던 국가들 중 드물게 사형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지난 1985년부터 현재까지 25개국 이상에서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일반범죄 혹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단지 4개국에서 사형제도를 재도입하였는데, 이중 하나인 네덜란드는 또 다시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나머지 3개국(잠비아,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은 아직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았다.

사형선고와 집행

1995년 한해동안, 41개국에서 2,931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 되었고 79개국에서 4,165명의 수인들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수치는 단지 앰네스티가 확인한 수치에 불과하며, 실제 수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해의 수치를 분석해보면, 소수

의 몇개국에서 대량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해 중국에서 모두 2,190명이 집행되었다고 보고받았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192명, 나이지리아에서 100명 이상의 수인들이 사형집행 되었다. 이 3개국의 수치는 지난 1995년 한해동안 전세계에서 사형집행된 전체수치의 85%를 차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앰네스티는 카자흐스탄에서도 101명이 사형집행되었다는 비공식적인 정보를 입수하였다. (지난 한해 카자흐스탄의 공식적인 사형집행은 63건이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이라크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형집행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이러한 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나 확인은 어렵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

국제인권법에 의하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형선고를 내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미주인권협약 그리고 어린이 권리위한 유엔헌장 등은 이를 명시하고 있다. 100개국 이상에서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거나, 국제법이 자국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조약에 의해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몇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들에게 사형선고 및 집행을 계속되고 있다.

1990년 이래로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그리고 예멘 등 5개국은 18세이하의 미성년자들에게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 이 이들 5개국에 해당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 중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에서 행해진 것들이다.(1990년부터 지금까지 총 6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억지효과에 대한 논란

사형제도가 다른 어떠한 처벌보다 더 범죄를 억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찾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사형제도와 살인율에 관한 가장 최근의 조사 통계 자료는 1988년 유

엔에서 조사한 자료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사형제도가 종신형보다 범죄 억지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의견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 이러한 증명이 조만간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증명된 것은 사형의 억지효과란 가설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범죄율에 대한 억지 효과

1988년 유엔의 조사가 제공하고 있는 사형제도의 사용과 범죄율의 변화에 관한 상관관계를 되돌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형제도의 사용을 줄인 국가에서 범죄 곡선의 심각한 변화나 갑작스런 증가와 같은 충분히 설득력있는 연역적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의 범죄율 역시 사형제도 폐지가 범죄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주지 못한다. 캐나다에서는, 살인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기 이전인 1975년에 인구 십만명당 3.09의 살인율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1980년에는 2.41로 떨어졌으며 이후 이 수치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지 17년이 지난 1993년 살인율은 인구 십만명당 2.19였으며, 이는 1975년보다 무려 27%가 떨어진 것이다. 이 수치는 캐나다에서 1973년에 이어 전체 살인 건수가 두 번째로 떨어진 것이다.

사형 폐지에 관한 국제적 움직임

최근 몇년간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국가가 사형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국제협약을 수용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 선택의정서: 모두 29개국이 비준하였으며 4개국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 유럽인권헌장 제6선택의정서: 유럽의 23개국이 비준하였으며, 3개국이 비준할 것이다.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미주대륙의 3개국이 비준하였으며, 4국에서 비준예정이다.

유럽인권헌장 제6선택의정서는 평화시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두 개의 의정서는 모든 경우에 대한 사형폐지에 관한 내용이며, 단 전시일 경우 국가가 원할 경우에만 사형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무고한 사람에 대한 사형집행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결코 사라질 수가 없다. 미국의 1987년의 한 조사에서 보면 1900년에서 1985년 사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 모두 350명이 무죄임이 밝혀졌다. 몇몇 수인들은 사형집행 직전에 무죄가 확인되어 면할 수 있었지만, 이들 중 23명은 이미 집행된 후였다. 1993년 10월 시민권과 헌법에 관한 국회 소위원회에서 미국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72년부터 당시까지 48명의 사람들이 유죄선고를 받고 사형을 대기중 무죄석방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잘못된 선고 및 집행을 방지할 만한 법적 안전장치의 미비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범죄에 관한 법적 제도가 가진 수없이 많은 근본적인 결함들을 열거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지난 시절을 고려해 볼 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들 중 일부는 사형이 집행되는 대단히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1986년 방글라데시에서 17세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진 모하메드 셸림.



세계 사형제도 시행현황 (1996. 4. 4 현재)

1.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57개국)

국명	폐지연도	일반범죄에 대한 폐지연도	최종 집행연도	국명	폐지연도	일반범죄에 대한 폐지연도	최종 집행연도
안돌라	1990		1943	이탈리아	1994	1947	1947
앙골라	1992			키리바티			국가설립후 집행없음
호주	1985	1984	1967	리히텐슈타인	1987		1785
오스트리아	1968	1950	1950	룩셈부르크	1979		1949
캄보디아	1989			마케도니아			
케이프 버드	1981		1835	마셀군도			
콜롬비아	1910		1909	마리티우스	1995		1987
코스타리카	1877			미크로네시아			
크로아티아	1990			몰도브	1995		
체첸 공화국	1990			모나코	1962		1847
덴마크	1978	1933	1950	모잠비크	1990		1986
도미니카 공화국	1966			나미비아	1990		1988
에콰도르	1906			네델란드	1982	1870	1952
핀란드	1972	1949	1944	뉴질랜드	1989	1961	1957
프랑스	1981		1977	니카라과	1979		1930
독일	1987		1949	노르웨이	1979	1905	1948
그리스	1993			팔라우			
기니-비사우	1993			파나마			1903
아이티	1987			포루투갈	1976	1867	1849
온두라스	1956			루마니아	1989		1989
홍콩	1993			산 마리노	1865	1848	1468
헝가리	1990			사우샘프턴시페	1990		
아이슬란드	1928			슬로베니아	1990		
아일랜드	1990		1954	슬로베니아	1989		

2.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15개국)

국명	폐지연도	최종 집행연도	국명	폐지연도	최종 집행연도
아르헨티나	1984		멕시코		1937
브라질	1979	1855	네팔	1990	1979
캐나다	1976		파라과이	1992	1928
사이프러스	1983	1962	페루	1979	1979
엘살바도르	1983	1973	세이셸		독립이후 집행없음
피지	1979	1964	남아공화국	1995	1991
이스라엘	1954	1962	영국	1973	
말타	1971	1943			

3.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국가(28개국)

국명	최종 집행연도	국명	최종 집행연도
알바니아		말디브	1952
벨기에	1950	말리	1980
버뮤다	1977	나우루	독립이후 집행없음
부탄	1964	니제르	1976
볼리비아	1974	파푸아뉴기니	1950
부르나이	1957	필리핀	1976
브룬디	1982	르완다	198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981	세네갈	1967
콩고	1982	스리랑카	1976
코로모스	독립이후 집행없음	수리남	1982
코트디브아르		토고	
지부티	독립이후 집행없음	통가	1982
잠비아	1981	터키	1984
마다가스카르	1958	서사모아	독립이후 집행없음

4. 사형제도 존치국(94개국)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리아	라오스	소말리아
알제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수단
안티구아 앤 밸부다	에디오피아	레바논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가봉	레소토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라이베리아	타지키스탄
바하마	가나	말라위	대만
바레인	그레나다	말레이시아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파테말라	마우리타니아	태국
바바도스	기니	몽고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벨라루스	가이아나	모로코	튀니지아
벨리제	인디아	미얀마	투르크메니스탄
베닌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란	오만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이라크	파키스탄	아랍 에미레이트
별키나 파소	자마이카	폴란드	미국
카메룬	일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챠드	요르단	러시아	베트남
칠레	카자흐스탄	세인트 크리스토퍼 앤 네비스	예멘
중국	제냐	세인트 루시아	유고슬라비아
쿠바	북한	세인트 빙센트 앤 그레나딘	자이르
도미니카	남한	사우디아라비아	잠비아
이집트	쿠웨이트	시에라 리온	짐바브웨
적도기니	키르기스탄	싱가포르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우수상 / 김성래, 천주교 산격교회 교리교사

8월의 따가운 햇살 아래 나는 참으로 우연히 영화관을 찾게되었고, 또 부담없이 한 편의 영화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영화를 보기 전에는 내가 이 영화에 관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오래도록 골몰할지 또 많은 것을 다시 물어보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제껏 당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우리의, 아니 적어도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기회를 가졌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며,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러한 물음은 영화 테드맨워킹이 내게 던져준 화두였다.

적어도 이전에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시켜 모든 이에게 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법이요, 규범이요, 관습이기에 이러한 제도가 인간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되는 지도윤리라고 여겼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과문이 내 가슴속에서 일어났다.

언제부터 사람이 사람의 죄를 죽음으로 다스리게 되었을까? 내가 알기로는 인류 최초의 법,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라는 구절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법이 강제적이고 절대적 권한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황금율리로 여겨져 왔다.

그러면 사람이 이러한 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시작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다. 원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였다면 그 여자는 현장에서 둘로 쳐 죽임을 당해도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죄없는 사람부터 둘로 쳐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하여라'고 말씀하신다.

이 복음을 읽으며 우리의 법과 판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선한 사람 아흔 아홉보다는 길은 양하나를 위해서 또한 가난하고 죄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로 구원의 대상은 죄 지은 사람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그 가운데는 살인자도, 도둑도, 차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죄인을 욕하고 미워할 수는 있어도 죄를 벌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부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죄없는 사람만이 둘로 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예수님이 바라신 것이 아닐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를 우리의 기준으로 묶어 죽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타인의 티끌만한 죄에는 세상이 뒤바뀔 것처럼 분개하고 앞장서 죄를 탓한다.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죄에 대한 보복과 인간성이 상실된 법을 위한 법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다른 모습도 사랑해야 한다. 어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우리는 둘이커봄 없이 쉽게 둘로 죄인을 단죄하려고만 한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행동을 탓하는 것이 아닐까? 진실한 사랑이나 관용이 없는 처벌은 한 인간을 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죽음으로 몰고가지만 그의 죽음이 살아남은 자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묻고 싶다. 그를 단죄하기 전에 우리 또한 죄인이며, 죄인이 진정한 참회를 가지도록 관심과 사랑을 주어보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영화 테드맨워킹은 우리가 이제껏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새로운 반란을 꿈꾸게 한다.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생명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용서받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죄에 대해 진정한 참회를 갈망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를 오히려 도와야 할 사람임을 생각하자.

teddyman워킹은 이러한 점에서 누구의 입장에서도 서지 않으며 단지 한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수잔 서랜던의 진지한 연기와 잔잔한 음악, 그리고 무관심한 정도로 중심을 고집하는 카메라를 들이댄다.

모든 것의 판단은 우리의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든지 앞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생명은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사실, 그리고 누구나가 거제받은 은총의 생명을 그 분이 부르실 때까지는 소중히 간직하며 자신의 성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우리는 영화를 보며 살인자를 미워했다가도 그 살인자를 다시 두 번의 살인으로 몰고가는 우리의 사회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에게는 개선의 여지도 회개의 순간도 허락되지 않은 채 단지 죽어주는(?) 것 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 죄인을 그저 십자가에 매달아 단죄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의 회개와 영원한 생명

을 얻도록 바라고 이끄신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인간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할 은총의 생명을 가졌음을 둘이켜보며, 죽음을 앞두고 사형수 손 팬이 한 말을 적으며 마칠까 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것이 살인이든 사형이든."

영화 'teddyman 워킹'을 보고

작자 / 이순분, 주부

주제에서 'teddyman 워킹'의 소감문을 모집한다는 글귀를 보는 순간 가슴 저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인간애에 대한 열정은, 차례를 모시기 위해 장을 보는 순간에도, 속을 꾹꾹 다져 넣는 송편을 만드는 순간에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의 화제속에서도 식을 줄 모르게 나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무엇이랄까 나의 안타까움을, 내가 흘렸던 눈물을, 나의 벅찬 사랑을, 이 세상의 모든 이에게 하지 못했던 가슴 속의 말들을 시간제한 없이 실컷 할 수 있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딱 한 번의 기회를 준 것 같은 후련함이었다.

그날 시사회에 초대받지 못한 난 아주 상냥한 아가씨 덕분에 좌석을 꽉 메운 대학생들 틈바구니에 앉을 수 있었다. 아무리 일찍 끝나도 2시간은 족히 걸릴 거란 생각에서부터 일기 시작하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들을 그날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나만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나혼자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싶었다.

영화가 상영되었던 그 시간들을 난 '영화를 보았다'로 결론내릴 수가 없었다. 스크린에 펼쳐진 그 2시간이 정말 시간으로 흘러갔는지 내가 본 이 사실이 정말 영화였는지 모를 정도로 난 일어날 수도 끝났다는 느낌도 가질 수 없는, 분명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에 온몸의 기능이 마비된 것 같았다. 누가 그에게 죄라는 한마디로만 죽음을 선고하는가, 죽음, 죽임, 그것으로 끝이 났을까. 그 사형수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한 번 깨우쳐주고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주어보지 못했으면서 사회가 정한 정상적인 사고력과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한 그 법의 테두리에서 잘잘못만을 따져 벌을 준다는 건 인간적이고 싫어하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이 사회의 뒷면을 그대로 덮어버리는 가장 나약한 모순이 아닐까.

먹고 살기 바쁜 집안에서 누가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며 누가 자신을 귀한 인간이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을까. 질시와 냉대 허기속에서 막연히 비뚤어진 그들의 가치관을 우린 오다가 손가락질하며 쑥덕이진 않았는가.

그 사형수가 참 사랑이 가득한 집안에서 온 가족의 따스한 관심과 기대속에서 풍요롭게 살며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온 나날이었다면 이 영화는...

죄는 지어졌는데 그 죄에 대한 별만 주면 모든 게 없어지고 끝나는 것처럼 모든 학식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다 정상인이 혈안이 되어 뛰어난 그 대가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양심을 알지 못하는 사형수를 만들뻔하지 않았던가!

자아를 발견하기도 전에 죄라는 양심의 가책을 가지기도 전에 양심이 먼저 퇴화되어 버린 그 사형수는 현실감 없는 영화 속의 이야기일까?

그 사형수는 원래 죄질이 나쁜 구제불능의 인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느 가정이나 한 가정의 맏아들이 갖는 맏이라는 자리의 의미는 특별하리라.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축복해 주시는 탄생의 순간을 그 사형수도 거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생명의 신비를 겪고, 나온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겪고 기대속에 자리났을 그 아기가 어떻게 사형수가 되야만 했을까.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해답을 스스로 찾길 바라는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 더 나은 집단의 무리들이 사형이라는 굴레로 단죄시킬 수 있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한 번이라도 타일러 주고 충고해주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지. 그들의 죄에 대한 판단력의 무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 한번이라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려는 노력은 했었는지. 혹 내 아이 내 가정에 피해가 오거나 않을 새라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같이 어울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편견으로 내몰아치지는 않았는지, 과연 죽임만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는지...

여기에서 난 우리 종교인들이 이 사회에 해야 할 무궁무진한 사랑의 선교를 퍼트릴 때라고 소리높여 전하고 싶다. 자신의 처절한 죽음과 완벽한 희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사랑과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주는 실천을 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역시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않았던가.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나외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는데 아닌가 그 여유가 물질적인 정신적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자라면 나보다 못한, 깨우치지 못한 자들에게 희생할 의무를 우린 가져야 할 것이다. 난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만큼 누리고 살며 벌받을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 나는 편찮다고 나는 잘 살 권리가 있다고 논리로 따진다면 더 이상 해 줄 말이 없지만 언젠가 한 순간 스쳐가는 바람처럼 흔적없이 사라져 버릴 우리의 유한적인 삶을 생각한다면 살아있다고 큰소리치는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죽음으로서 영원한 사랑을 가르쳐주신 분을 생각한다면 죽임을 당했는데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생각한다면 육체가 죽는 것이 무서운게 아니라 사랑을 모르고 깨우치지 못하고 죽는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염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배고픔을 느끼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나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상스런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기성인들은 분명 무엇인가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 다시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무지로 인해서 생기는 불쌍한 사형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

고 나의 지식을 매장시킬 수 없다고 밖으로만 나돌다 내 아이들을 내 이웃들을 매장시킬 순 없는 일이다. 밥 한그릇 더 차지 하려는 자리 다툼에서 벗어나 내가 희생했을 때의 충만함을 양보했을 때의 너그러움을 가르쳐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미안하나 마 내 아이들에게 가르킬 것이다. 더 나은 자리보다 더 넓은 마음을 지닐 것을 좀 더 많이 가진 권력자보다 좀 더 많이 나누어 줄 줄 아는 무소유의 편안함을.

사회적 부유한 혜택을 받으며 안정된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낮아질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하느님 앞에 평등한 똑같은 우리끼리 서로 서로 단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사형수를 만들고 그 사형수는 우리의 욕심을 대신해 죽는 것이다. 이 영화가 쾌락주의에서 벗어나 흥행에서 실패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이 있는 영화임을 밝히고 싶고, 감독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육신의 죽음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참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인생의 중반에서 이 영화는 나에게 크나큰 사랑을 가르쳐 준 잊지 못할 영화이다.

“영화 데드맨 워킹”을 보고

사형제도의 존속과 철폐...

작자 / 박미희, 충주성모학교 교사

영화의 후유증으로 텐데이블에 모짜르트 레퀴엠을 걸었다. 계속되는 우울함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몇 잔의 커피를 들이켜야 했다. 자리에 누워도 잠은 오지 않고 영화의 장면 장면들이 머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있었다. 영화의 끝부분의 십여분 동안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내 연보라색 손수건은 눈물에 젖어 짙은 보라빛으로 흥건해져야 했었다. 처음 나는 이 영화를 깊이 보려하지 않았다. 정기구독하고 있는 영화전문 평론지의 별점을 그리 신뢰하진 않지만 겸은 별이 4개 하고도 하얀 별 추가 하나 상당히 탁월한 높은 평점으로 평가되어 있어 좀 따분하고 어려운 주제일거란 생각에 품나게?! 자판기 커피까지 뽑아들고 나의 지적 허영심만을 채우겠다는 의무감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데드맨워킹은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가슴을 울려 깨우고 있었다. 헬렌 프레진 수녀의 교도사목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면서도 분명한 해답으로 논쟁할 수 없게 하는 상반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살인과 강간이라는 흉악한 범죄의 희생양인 피해자의 가족들과 그들을 재물 삼은 매튜를 크나큰 사랑으로 보듬어 안은 수녀의 서로 다른 처지

는 사형제도의 존속과 철폐라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 영화를 단순함에서 끌어올려 함께 생각하고 아파하게 하고 있었다.

이 영화의 처음은 헬렌 수녀가 사형수 매튜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한통의 편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수도자로써의 입장에 충실하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돋게 된 헬렌 수녀는 매튜를 만나면서 점점 그에게 연민을 느끼며 박애적 사랑으로 그의 회개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매튜는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이며 히틀러 숭배자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쓰레기 같은 악한이다. 이러한 악한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10대의 데이트족을 아무 이유없이 처참하게 살해한 사형수 매튜 폰스렛은 사형선고 뒤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달라 호소하는... 동정할 가치조차 없는 이 비열한 인간에게 과연 사형제도는 보복살인이며, 휴머니즘 포기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지만 데드맨워킹은 단순한 말로 사형제도는 반 인간적이란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형대에 누운 사형수의 두려움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린 부모의 가슴을 헤집는 슬픔이 교차하고, 이 두가지 모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사형집행의식과 살인 범죄자의 살인 순간은 분명 똑같은 죽임의 행위인 것이다. 생명은 악한의 것이건 착한의 것이건 소중한 것이다.

“Deadman Walking!” 사형집행장을 향해 걸어가는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듣는 외침이다. 그의 영혼의 안내자인 헬렌 수녀는 눈물이 흐르고 매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넨다. 결국 사형수는 죄값을 치루고 사형장의 독극물 주사로 죽음에 이른다.

인간 존재의 본질,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의 것이다. “사형과 인간의 존엄성”이란 책에서 김정우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는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이 영화에서도 역시 그 권리를 하느님께 귀속시키고 있다. 우리시대는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란 제도로써 그 죄값을 대신하게 하는 슬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핏빛 아우성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또다시 죽임의 제도로 그때의 영혼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기원할 수 있는 것일까?

매튜의 마지막 대사가 마음속에 파고든다.

“나는 반대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에, 그것이 살인 이든 아니면 사형이든..”

우리에게 남겨진 전직 대통령의 사형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 것인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의 숙제인 것이다. ■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계도처에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계 모든 지부와 그룹, 회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당신도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형실상을 알립시다

당신의 친구, 직장동료, 가족에게 국제앰네스티 자료를 배포하고 이야기 합시다.

국제앰네스티의 자료를 아파트 및 회사게시판에 부착합시다. 자신이 아는 기자와 언론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시다.

김영삼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항의편지를 보냅니다

보낼 곳:

김영삼대통령: 110-05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
청와대

법무부장관: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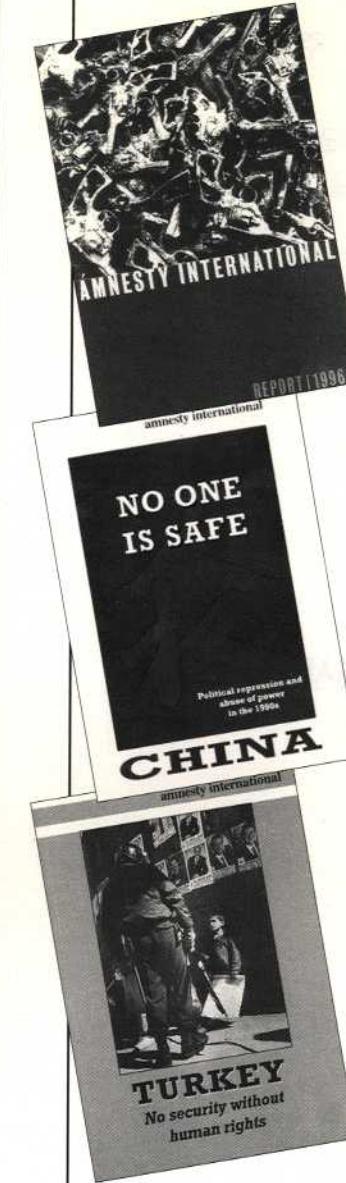
연락을 주시면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706-600, 대구 경북체신청 우체국 사서함 36호
Tel. 053-426-2533 Fax. 053-422-1956

늘푸른평화

704-370,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83-5
상인청소년 건전생활관내
Tel. 053-641-1678 (FAX 겸용)



앰네스티 간행물

96 연례보고서

매년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95년 한해동안의 각국 인권침해 유형과 실상을 기술하고 있다. 1996년 7월에 발간되었으며, 남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60여개국의 인권상황을 개괄하고 있다.
(영문판, 약300페이지, 2000원)

중국:

누구도 안전하지 않는 나라

1996년 3월부터 전개되는 중국캠페인은 최근에 발간된 중국은 인권종합보고서이다. 특히 88년 천안문사태이후 1990년대 가중되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억압과 광범위한 권력남용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전반을 다루고 있다.
(영문판, 약121페이지, 5000원)

터키: 인권없이 안전없다

1996년 10월에 발간된 이 보고서는 1990년대 터키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문, 가혹행위와 더불어 새로운 형태로서 “실종”과 비사법 처형으로 대표되는 인권침해현실을 전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영문판, 총128페이지, 5000원)

국제앰네스티란?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최대의 민간인권운동단체입니다. 앰네스티는 특정 정부, 정치적 집단,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해 또는 특정 종교에 독립적이고 공평하게 활동합니다. 앰네스티운동은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며 전세계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됩니다.

앰네스티의 수입사항

모든 양심수의 석방 촉구 / 정치적 수인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촉구 사형 및 고문의 종식 / 비사법 처형과 “실종”의 종식 / 전세계 난민보호 인권교육 / 그외 기타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국제앰네스티는 인권보호운동에 대한 공로로 1977년도에 노벨평화상을, 1978년도에 유엔인권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가의 살인행위 - 사형제도

생명권(The Rights of Life)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제인권관련 규준들은 생명권을 확인하고 있으며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 세계의 국가들이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6조 1항은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 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 의정서는 이러한 생명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계의 국가들에게 국가의 의무로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에 속하는 관행중의 하나이다. 사형은 법률적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침례한 논쟁거리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찬반논쟁의 대상이었다.

고대의 험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고대로마의 십이표법 등으로부터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사형제도는, 근대형법학이 성립된 이후에도 루소의 사회계약설, 칸트와 혜겔의 응보형론, 밀의 공리주의 등 사형존치에 대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진행되어 왔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사형존치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알려주는 연구결과들, 사형폐지를 규정하는 국제인권규준의 제정 그리고 사형폐지국에서의 경험은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1764년 베카리아(Cesare Beccaria)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사형폐지론은 시작되었으며, 그후 길핀, 블랙, 톰브로소, 리스트 등으로 이어지며 세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침블리스(Chambliss)는 1951년부터 1966년 사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집행된 수만의 숫자와 살인율을 비교하여 사형집행률이 현저히 감소해도 살인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바버(Barber)와 윌슨(Wilson)이 퀸스랜드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형집행률과 살인율간의 관계는 정비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셀린(Sellin)교수는 1961년에서 1967년까지 미국에서 서로 비슷한 양상을 가진 주들의 살인율 비교과정에서 사형제도가 살인율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프랑스 판사인 앤셀(M.Marc Ancel)씨는 1960년 유엔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24개국과 오스트리아의 1개주 그리고 미국의 6개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1988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범죄학 연구소장으로 있는 로저 후드박사(Roger Hood)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9개국에서 사형이 폐지되었다고 한다.

1994년 1월 현재 세계 90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53개국,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16개국,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국가 21개국 - 그 폐지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94년 1월 현재 103개국에서 사형이 존치하고 있으며 93년동안 세계에서 61개국의 3,283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집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먼저 국가에게 사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다른 어떠한 법의과의 비교 형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이다.

둘째, 사형은 잔인하고 모욕적이며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는 점이다.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 전기의자, 극독주사, 총살, 돌로 쳐죽이기, 가스실 등이다. 이러한 집행방법은 그 자체로도 비인간적이며 잔인하다. 그리고 사형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강요하고 인간적 고통을 감수하게 한다.

세째, 사형제도는 범죄의제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형벌의 기능인 응보, 범죄억제 그리고 교도의 측면에서 한 수인을 사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미국,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에서 조사된 연구내용들은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보다 효과적인 범죄억제기능을 가진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째, 사형은 사법적 오류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형태의 보상으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의 사형존치국가에서 반반히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사형제도가 종종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독재국가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빈번히 사형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정권에서 김대중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던 사실은 좋은 예이다.

여섯째, 사형제도가 그 적용과정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종류의 살인을 행한 어떤 수인에게는 무기형이 선고되고 어떤 수인은 사형집행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사형제도는 빈곤계층, 소수언종, 소외집단에게 편중되어 적용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국가인 중국에서는 단지 소 일곱마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수인에게 사형이 선고되며 미국등 6개국에서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사형집행하고 있다.

한국은 사형존치국이며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이다. 한국은 오랜 사형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법의식과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고 있다. 형법, 군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100여개가 된다.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며 지금도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1987년 이른바 가정파괴범에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형으로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며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소위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을 사형시킨 행위가 비록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겠다는 도덕적인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사형제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인간의 생명권은 고유하고도 존엄한 것이며 어떠한 이유나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다. 사형제도가 지니고 있는 범죄적 성격에 비추어 볼때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또다른 살인 행위일 뿐이다.

사형제도: 인권에 대한 총체적 침해

(94 연례보고서에서 발췌)

국제엠네스티는 무조건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며, 사형철폐의 확산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인간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전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사형집행에 직면하고 있는 수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국제엠네스티는 정치가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흔히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힘 없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공평하게 부과되는 사형제도가 임의적이고 돌아킬 수 없는 형벌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의 캠페인과 홍보를 통하여 사형제도가 사회범죄률이나 정치적 폭력의 발생률을 억제하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형사적으로 사형선고와 집행을 감시하고 임박한 집행이 있는 곳은 어디아든지 간에 자비를 호소하여 왔다.

93년에 있은 학소식은 사형폐지국에 4개의 나라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2월 기니비사우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헌법개정 이전 군법정에서는 살인자나 국가안보 침해자에게 사형을 부과하였었다. 4월에는 홍콩의 입법 회의와 갱비아의 하원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철폐를 표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2월에 그리스가 전시를 포함한 모든 시기에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철폐하였다. 또 다른 긍정적인 전전으로는 많은 영연방국의 최고항소법정인 영국주밀원내 사법위원회의 판결이 있었다. 이 사법위원회는 5년이상 대기중인 수인에 대한 집행실행은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 위원회는 사형선고후 5년이상 수감되어 있는 수인들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4년동안 사형을 대기중이던 2명의 자마이카인 사례에 관한 주밀원 사법위원회의 이러한 판결은 최소 16개 영연방국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특히 이 판결의 결과로 자마이카에 있는 100여 명의 사형수들에 대한 감형이 기대된다.

또 하나의 소식은 1월의 미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이다. 미연방 최고재판소는 형선고 이후 무죄의 증거를 제출하는 사형수들에게 사형집행 이전 연방법원에서 새로운 심리를 가질 기회가 일반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텍사스의 수인중 사형선고에 대하여 항소하였던 레오넬 혜례라씨는 3월 12일 사형집행되었다. 93년도에 미국에서는 총 38명이 사형집행되었으며, 이중 17건이 텍사스주에서 집행되었다. 38명중 4명은 사형선고 당시 17세인 미성년자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전세계적으로 극히 드문 경우이며 수많은 국제조약에서 이를 금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필리핀과 페루에서 사형제도를 제도입한 사실과 적용범위의 확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12월 필리핀은 살인, 마약거래, 강간 및 방화범 등을 포함한 일반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제도입하였다. 필리핀은 지난 1987년도에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9월 페루의 국회는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승인하였다. 이 헌법은 테러리즘과 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확대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로 승인된 이 헌법은 78년 페루가 비준한 미주인권협약 제4조 2항에 위배된다. 이 협약에는 사형제도가 현재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하여 확대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또한 지난 3월에 발생한, 3년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고 있는 일본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다. 같은 달 교수형된 3명중 한명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76년 이후 한해동안 집행된 경우 중 가장 많은 숫자인 7명이 지난해 일본에서 사형집행되었다.

쿠웨이트 역시 사형집행이 재개되고 있다. 3월 쿠웨이트정부는 지난 90/91년 점령당시 이라크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로 이라크민족을 교수형에 처하였다. 89년 이래로 쿠웨이트당국에 의해 시행된 첫 사법적 사형집행기록이었다. 국제엠네스티는 92년 4월 이후 이라크군에 "협력"하였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있는 22명의 사형수들이 "공정한 재판에 관한 국제규준"에 부합되는 재판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사형집행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국제엠네스티는 알제리에서 3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이 재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93년 한해동안 26명이 사형집행되었으며, 300명 이상이 때우 불공정한 재판에 의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국제엠네스티는 93년 한해동안 각각 33명과 87명의 사형집행이 발생한 이집트 및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의 사형집행의 재개에 관해 보고하였다. 93년 이란에서도 실제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적어도 77명이 사형집행되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적으로 사형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93년 한해동안 1,400여명이 사형집행되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캘리포니아, 모豕비크, 파나마, 슬로베니아공화국,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등의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였다.

93년말 현재 전세계 국가의 47%가 법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53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하였고, 16개 국가는 전시범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21개 국가와 지역이 법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치하지만 최소 10년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없는 세상을 향하여: 장애물과 희망

(AI Index : IOR 52/04/91)

래리 콕스 (전 국제엠네스티 사무부총장)

이 글은 91년 9월 16일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내 인권분과회의 (Conference on the Dimension)의 일환으로 열린 사형에 관한 국제엠네스티 세미나에서의 발제문이다

사형은 차별중에서도 가장 전제주의적인 것이다.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형을 집행하는) 국가의 판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국가는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파괴할 권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살과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고, 살인행위는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기에, 역사에서 폭력과 공포에 의한 지배를 한 사람들이 항상 이 사형제도를 열성적으로 사용해 온다는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권력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여타의 다른 인권들을 불법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국가들과 종종 일치한다는 사실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모든 인권을 위한 투쟁들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과, 폭정을 몰아낸 나라들에서 교수대와 총살대가 사라지는 등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예들 또한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사회와 사형이 폐지된 사회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정말 놀랄 만한 일은 이러한 상관관계에서의 예외들이다.

나는 이러한 예외들 중의 한 나라인 미국 - 발달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아직도 수인들을 처형하는 몇 안되는 사회 중의 하나 - 에 살고 있다. 미국은 2,500여명의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교수대나 득가스실, 전기의자나 극약을 기다리고 있고, 지진이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처형도 최고법원이 허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법이 지배하고 그리고 성공할 경우 현재 부당하게 유죄를 선고받거나 부당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많은 수인들의 집행을 보장하는 상소기회의 제한이나 폐지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강한 전통'이 살아 있는 나라이다.

동시에 미국은 이러한 사형에 대한 열풍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는 나라이다. 너무나 가난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형수들을 기꺼이 변호해주는 변호사들, 몇몇 국가에서 집행을 위한 의술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의사들, 사형의 본질적인 성격을 폭로하는 정보를 모아서 배포하는 사회과학자들, 무고한 사형수들에 대한 사례들을 파악하여 여론화하는 기자들 그리고 편지를 쓰고, 탄원서를 돌리고, 모든 사형집행에 대한 철야 반대시위를 전개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공식적인 살인행위를 막으려는 이 운동에 가담한 우리들은 몇가지 추악한 사실들과 당황스러운 질문에 직면해야 했다. 쓸모없고, 비인간적이고, 참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나라들에서 폐지되고 있는 사형집행에 왜 우리의 동료 시민들은 집착하고 그것을 부르짖는 것인가? 인권을 지지하고, 어떤 상황에서의 고문도 반대하고, 국가권력이 어떤 수인들의 몸에 전선을 연결하여 끔찍한 고통을 느낄때까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일삼는 나라들에 관한 소식에 접하고 놀람을 금치 못하는 시민들이 어찌하여 자기나라에서, 예를들면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수인들에게 전선을 연결하고 엄청난 양의 전기충격을 가하여 문자 그대로 지글지글 타 죽도록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환영할만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정부가 사형을 존치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강요단련 왔다

내가 이 질문을 이 자리에서 일부만이라도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많은 나라들에서 사형을 철폐하려는 노력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서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잔혹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주장들은 내 경험에 의하면 다른 나라들에서 고문이나 정치적 수감 등의 불법적인 잔혹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장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미국같은 나라의 국민들이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사형을 찬성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왜 다른 나라들에서 고문이나 정치적인 구금을 국민들이 그저 조용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지지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은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형벌이기에 어떠한 조건에서도 금지된다는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하여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반대운동을 하면서 흥미로운 점은 이 주장이 사람들에게 별로 거부감을 안 준다는 사실이다. 누구를 죽이는 것이 잔인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사형집행을 목격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시각에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고받고, 그 시간이 오기까지 무력하게 붙잡혀 있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 들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는 간에 그것의 명백한 잔혹성을 확신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잔혹성을 부인하려고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들은 이 잔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들은 인권유린을 합리화하기 위해 예전부터 수없이 사용된 주장을 무기로 삼는다.

첫째는 사형은 잔인하고, 어찌면 악할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개인에게 잔혹행위를 가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해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살해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수인들을 살해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만약 어떤 잔혹행위가 어떠한 유효목적을 위해 허용해도 된다는 주장은 거부될 것이다. 그런데 이 자체로도 이 주장에는 숨길 수 없는 결함이 있다. 수백년동안의 경험과 셀 수 없이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사회나 개인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형이 어떠한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는 근거도 물론 없다. 이와는 정반대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에서 사형의 결과로서 강력범죄발생비율이 줄어든 예는 찾아볼 수가 없다.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주들은 사형집행을 폐지한 주들보다도 살인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다. 최근의 몇년동안 텍사스주는 다른 어떤 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하였는데, 그렇다면 미국 상원사법위원회에 따를때, 91년에는 어떤 주에서 가장 높은 살인범죄 증가율을 보였겠는가? 바로 텍사스주이다. 모든 연구와 통계자료가 똑같은 결론을 뱂고 있다. 사형은 강력범죄를 줄이는데 어떠한 특별한 효과도 없으며 사형의 잔인성 덕분에 오히려 강력범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감옥은 이미 범죄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무능력화할 수 있고, 또한 사형과는 달리 법의 잘못된 집행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형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돈조차 절약해주지 못한다.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예방책들과 재심청구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한 사람을 감옥에 40년동안 수감하는데 드는 비용의 두배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고, 사형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될 때 사람들은 이를 거부한다. 그런데 사형에 대한 옹호는 이성적인 주장과 논거들에 단지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이다. 그것의 힘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앞에 가장 중요하 것은 두려운이다. 이 세계에는 그리고 특히 미국에는 많은 두려운이 존

제한다. 미국내에서의 강력범죄는 오랜세월동안 증가해 왔고, 집없음, 마약사용, 민간인의 무기 소지율의 확산과 마찬가지로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 시민들은 두려워하고 좌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들은 필사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하고 있고, 흔히 이들의 지도자들과 언론에 의해 제안되는 대책은 사형이다. 그리고 사형이 이들에게 제안되는 유일한 대책일 경우, 이것이 실제 시민들을 보호하는데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만약 동일한 사람들에게 시민들의 두려움을 염두에 둔 어떠한 대안이 주어질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살인한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찬성하느냐」는 것만을 물을 경우, 그들은 압도적으로 -때로는 79%나- 「예」라고 답한다. 그런데 질문에서 선택의 범위가 사형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의 두가지로 넓어지게 되면 대부분은 종신형을 택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구금자의 가족에게 구금과 더불어 어떤 형태의 보복조치가 덧붙여진다면, 사형 찬성률은 급격히 떨어진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사형찬성률이 24%까지 떨어졌다. 만약 사람들이 이러한 진정한 의미의 (사면이 없는 말그대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종신형이라는 대안과 더불어 강력범죄의 원인을 형성하는 사회문제를 고발하는 경력한 조치와 동시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확실한 검거 및 유죄판결이 증가되도록 하는 조치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도대체 미국에서 누가 사형제도를 응호하려고 할 것인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것 같다. 만약 사람들이 범죄를 막아보려는 방안으로 사형제도의 실패에 대한 정보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진지하게 표명하는 어떤 대안에 대해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행위의 유혹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것이다.

사형옹호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다. 「의제」는 새로운 주장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응보」라는 것이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주장은 사람들이 사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들은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인간사회로부터 분리를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인간사회밖에서 그들은 더이상 인권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외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위의 주장들에 생명을 불어넣는 감정은 두려움 보다는 오히려 분노와 증오이다.

이 주장은 매우 강력한 동시에 위험한 것이다. 이 주장이 위험하다는 것은,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 행동때문에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때문에 고문을 받거나 재판없이 투옥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매우 강력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책임이 있는 자들을 죽이고 싶게 만드는 범죄를 알고 있거나,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사랑하는 사람, 또는 자식, 또는 둘 다를 살해한 사건을 떠올려보면 된다.

그러나 「응보」로서의 사형은 사형을 받아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정당하고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재판제도를 요구한다. 똑같은 죄, 또는 더한 죄를 지은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면서 단지 몇몇 사람들을 죽이는 제도는 「응보」가 아니라 제물바치기이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 있는 제도이다. 나는 모든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범죄재판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명백한 혁생이고, 시민들의 공포와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 몇몇 수인들을 제물바치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0,0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 많은 숫자 중에서 약 200명이 사형집행을 위해 추려진다. 무고하게 유죄판결을 받거나 형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된다. 사형사건에 대한 재심리 결과에 의하면 1972년 이래 4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0년이래 사형의 집행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세상에 알려진) 무고한 23명의 사형수들이 집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형은 불공정한 법의 집행을 밝혀낼 수 있는 노력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형을 당한 무고한 사람들의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이 만든 제도에 신만이 행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할 때 생기는 결과이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행위로 검거되었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이 경우에도 그 근거는 분명하다. 그것은 그들이 지은 범죄의 성격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적 지위, 그들의 피부색, 또는 그들이 죽인 사람의 피부색 또는 경제적 지위때문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지진아이거나 소수민족일 경우이고,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들은 종종 위에서 열거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이다.

모든 사형의 80%는 흑인들에게 린치를 통해 죽이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주에서 집행되어 왔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사형논쟁에 있어서 인종문제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 상원의 회계위원회에서는 최근에 28건의 상이한 사례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인종문제가 사형의 모든 단계 -고소, 선고, 집행- 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인종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만약 조지아주에서 백인을 죽였다면 흑인을 죽였을 때보다 사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7배나 된다. 지난 주 뉴욕타임즈는 1면 머릿기사로 한 사형집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 이야기가 머릿기사로 처리된 이유는 지난 50년간, 그리고 1,000건이 넘는 사형집행중에서 처음으로 백인이 흑인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백인은 모두 백인만을 살해한 아홉번의 전과가 이미 있었다.

나는 미국의 범죄재판제도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비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만든 어떠한 범죄재판제도는 그것이 작동되는 사회의 편견과 불평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지만 놀랄지는 않다. 진정으로 유감스럽지는 않지만 더럽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제도가 사람을 죽게도 살리게도 만드는데 쓰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고, 이미 보통사람들보다 모자라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그것을 선동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사실 정말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사람들에게 그들이 동일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결국에 죽이는 것은 훨씬 쉽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사형이 우리에게 내건 하나의 도전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인간의 폭력을 그저 더많은 폭력으로 상대하기 보다 두려움과 증오, 자신의 분노와 편견을 뛰어 넘어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은 계방된 질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사형폐지 운동에 참여할 때마다, 한 나라가 사형을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폐지시킬 때마다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라는 답에 더 가까워진다. 다른 모든 폭력과 사회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세계와 인류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다. 최근에 일어난 모든 '불가능한' 변화에 힘입어, 나는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고 그리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나는 정부에 의한 인간의 살인행위가 어떤 이유에서도 절대로 불가능할 국가와 세계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수정일	등록번호
		9

사형제도의 문제점

I. 사형폐지 운동의 의문점에 대한 엠네스티의 답변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찬반이론 역시 분명히 구분되는 실정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글은 일반 대중들이 사형폐지 운동에 대해 느끼는 가장 흔한 질문들을 모아 엠네스티가 답변의 형식으로 그 입장을 정리한 자료이다.

1) 사형은 폭력적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 ☞ 여태까지 사형제도와 범죄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으나 사형이 여타의 형벌과 비교해 특별한 억지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1980년 '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제6차 유엔의회'에 제출된 유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사형의 억제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심충적인 연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의 효과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는 못하였다." 1949-53년간의 '사형제도에 관한 영국왕립위원회'는 유럽과 영연방국가들의 광범위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한 보고에서 "우리가 검토한 어떤 자료에서도 사형폐지 후 살인율이 증가했다거나, 사형부활로 살인율이 감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1983년의 한 연구는 사형을 폐지한 14개국의 단기, 중기, 장기의 살인율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조사대상국의 절반 이상에서 사형폐지 후 살인율이 감소했다고 나타났다.
- ☞ 몇몇 연구에 따르면 사형집행 직후 살인율이 실제로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경우, 1992-63년간 뉴욕 주의 철간 살인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형집행 다음달에 평균 두 건의 살인사건이 더 발생하였다.
- ☞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많은 범죄들이 엄청난 감정적 고조상태, 공포 또는 약물과 알콜의 영향 하에서 발생되었으며, 이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범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2) 사형이야말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 아닌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였으므로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할 범죄자들도 있지 않겠는가?

- ☞ 국가는 죄인을 처형시킬 권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 처형이란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려 고의적이고도 용의주도하게 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줄어들게 된다.
- ☞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는 흔히 정신상태가 의심스로운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범인에게 책임소재를 가볍게 지우고 있다.
- ☞ 범죄학자들은 오랫동안 폭력범죄는 흔히 빈곤, 실업, 알콜중독, 결손가정 등과 같은 여타 사회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인정해왔다. 이런 문제들은 사형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3) 죄수를 사형시키는 대신 종신토록 교도소 내에 가두어 두는 것이 더 가혹하지 않은가?

☞ 엠네스티는 사형제도가 극단적으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처형은 명백하게 가혹한 처사일 분 아니라 처형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도 잔혹한 고통이다. 그 과정은 종종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엠네스티가 입증하였던 고문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공포스러운 고문기법은 처형의 위협이라고 한다.

☞ 법률상 종신형이라도 재심의 가능성성이 보장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석방을 고려하는 나라들이 많다.

☞ 범죄자의 교화와 개생은 오랫동안 형사정책의 기본 목표로 인정되어 왔다.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은 개생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4) 사회의 기반 그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주의자, 테러리스트에 대해선 사형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추구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흔히 그 명분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사형제도에 의존하게 되면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과 그 대의명분에 대한 순교자로 행세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형은 범죄의 억지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유인책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5) 엠네스티는 사형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사법체계 내에서 항소의 권리가 보장되고 증거주의의 기준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무고한 사람을 처형시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

☞ 사형은 최종적인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다. 무고한 사람이 일단 처형되어 버리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사형이 형벌의 한 형태로 남아 있는 한 이런 종류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처형된 후 무고함이 밝혀진 사형수의 사례가 상당히 많다.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정한 규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 후 처형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고한 사람을 처형시킬 현저한 위협이 존재한다. 심지어 사형선고 후 수시간 내에 처형에 행해져서 항소나 사면청원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나라도 있다.

6) 사형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 가장 발달한 엄격한 형사사업체제 하에서도 선고 과정은 피고의 경제력, 인종, 종교, 대중의 사형지지도 등과 같은 요소에 영향받기 마련이다. 꼭같은 겨로가의 범죄, 그리고 동일한 상황의 범죄라 해도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당하지 않가도 한다. 또한 미국 및 여타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기소된 사람들 중 실제 사형을 선고 받는 죄수들은 비교적 소수이다.

7) 국민 여론이 사형을 지지하는 경우 어떻게 정부가 사형을 폐지할 수 있겠는가?

☞ 여론조사는 자칫 오도될 가능성을 항상 가진다. 또한 대중들이 언제나 전적으로 사실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가 합리적으로 되기 위해선 교육이 필요하다. 사형폐지 운동과정에서 통하여 엠네스티는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구체적인 사실과 논리를 접하기만 하면 그 주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 엠네스티는 사형이 인권유린의 한 형태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정치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대중여론을 환기시키고 계도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여러 나라에서 정치가들이 사형제도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사형제도의 부활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대중의 존경을 잃지 않았던 사례가 많다.

8) 추상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기란 쉽다. 그러나 자신의 가까운 친지가 살해되었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 사형시킨다고 해서 살해된 피해자의 생명을 되찾지도 못하며 그 가족들의 손실을 덮어주지도 못한다. 범죄피해자의 친지들이 가지는 절박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사형은 죄수의 가족에게도 또한 슬픔과 고통을 야기시키며 폭력의 악순환만 더할 뿐이다. 그러한 피해자 가족들을 진정으로 돋고 더 이상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보강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과 보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9) 사형수를 종신토록 감옥에 가두어두는 것보다 사형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은가?

☞ 어떤 경우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불어 사형제도 또한 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형벌이다. 왜냐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잡하고도 정밀한 항소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0) 엠네스티가 일반 범죄로 인한 사형수보다는 차라리 양심수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 엠네스티 활동의 핵심은 엠네스티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규약은 엠네스티 조직의 최고결정기구인 국제총회에서 확정된다. 규약 제1조에 따르면 엠네스티는 첫째 양심수의 석방, 둘째 정치적 수인의 공정한 재판, 셋째 어떤 경우이건 고문과 사형의 폐지 등을 위해 활동한다. 이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엠네스티는 최선을 다하며, 최근 1965년 국제총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된 것처럼 사형폐지 운동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 사형수들 중에는 반드시 일반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수인과 양심수들도 오래동안 사형선고와 처형의 대상이 되어왔다.

11) 엠네스티가 생명권을 믿는다면 왜 낙태에는 반대하지 않는가?

☞ 엠네스티의 규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엠네스티의 활동은 수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다. 엠네스티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심의 영역을 언제나 제한시켜왔다. 낙태, 안락사, 대중위생과 영양공급 등과 같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달리 많지만 그것들은 엠네스티의 활동 범위 밖의 일이다. 엠네스티 회원 개개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겠으나 조직으로서 엠네스티는 이들 문제에 관해 특정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12)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엠네스티가 사형의 시정을 찬성하는 특정종교를 모욕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가?

☞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청원하는 겨울 엠네스티는 특정 정치이념이나 종교를 공격하지 않으며 국제법에 부합되는 기본적 인권을 강조한다. 종교적 교리는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라고 가르친다. 주요 종교들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자비를 명한다. 주요 종파의 단체들 중에는 사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단체도 많다.

V. 국가의 살인행위 - 사형제도

생명권 (The Rights of Life)은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제인권관련 규준들은 생명권을 확인하고 있으며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 세계의 국가들이 취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세계인권선언 제3조는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B협약) 제6조 1항은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선택 의정서는 이러한 생명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계의 국가들에게 국가의 의무로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전통에 속하는 관행중의 하나이다. 사형은 법률적 형벌의 범위를 벗어나 철학, 윤리학, 사회학, 인류학, 종교 등의 각 방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 찬반논쟁의 대상이었다.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 구약성서, 고대로마의 십이표법 등으로부터 의사적 기원을 두고 있는 사형제도는, 근대형법학이 창립된 이후에도 루소의 사회계약설, 칸트와 헤겔의 응보형론, 밀의 공리주의 등 사형존치에 대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왔다.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무시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권하고 있다는 점을 사형존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형존치론은 그 영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사형존치에 대한 기존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알려주는 연구결과들, 사형폐지를 규정하는 국제인권규준의 제정 그리고 사형폐지국에서의 경험은 많은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1764년 베카리아(Cesare Baccaria)가 “범죄와 형벌”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적절성, 불필요성, 부당성을 지적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서 사형폐지론은 시작되었으며, 그후 결핀, 돔드로스, 리스트, 등으로 이어지며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챈블리스(Chambliss)는 1951년부터 1966년 사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집행된 수인의 숫자와 살인율을 비교하여 사형집행율이 현저히 감소해도 살인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 바버(Barber)와 윌슨(Wilson)이 퀸스랜드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형집행율과 살인율간의 관계는 정비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셀린(Sellin) 교수는 1961년에서 1967년까지 미국에서 서로 비슷한 양상을 가진 수들의 살인을 비교과정에서 사형제도가 살인율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프랑스 판사이인 앤셀(M.Marc Ancel)씨는 1960년 유엔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24개국과 오스트리아의 1개주 그리고 미국의 6개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1988년 영국 육스포드 대학의 범죄학 연구소장으로 있는 로저 후드박사(Roger Hood)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9개국에서 사형이 폐지되었다고 한다.

1994년 1월 세계 90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53개국,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 16개국, 사형은 존치하나 최근 10년간 집행하지 않은 국가 21개국 - 그 폐지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94년 1월 103개국에서 사형이 존치하고 있으며 93년 동안 세계에서 61개국의 3,283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32개국에서 1,823명이 사형집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먼저 국가에게 사형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생명권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다른 어떠한 법의과의 비

교형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형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이다.

둘째, 사형은 잔인하고 모욕적이며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는 점이다. 현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 전기의자, 극독주사, 총살, 돌로 쳐죽이기, 가스실 등이다. 이러한 집행방법은 그 자체로도 비인간적이며 잔인하다. 그리고 사형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강요하고 인간적 고통을 감수하게 한다.

세째, 사형제도는 범죄억제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형벌의 기능인 응보, 범죄억제 그리고 교도의 측면에서 한 수인을 사형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미국,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에서 조사된 연구내용들은 사형제도가 다른 형벌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기능을 가진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째, 사형은 사법적 오류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형태의 보상으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의 사형존치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사형제도가 종종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독재국가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빈번히 사형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의 과거정권하에서 김대중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던 사실은 좋은 예이다.

여섯째, 사형제도가 그 적용과정에 있어 형평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종류의 살인을 행한 어떤 수인에게는 무기형이 선고되고 어떤 수인은 사형집해오디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사형제도는 빈곤계층, 소수인종, 소외집단에게 편중되어 적용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국가인 중국에서는 단지 소 일곱마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수인에게 사형이 선고되며 미국 등 6개국에서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사형집행하고 있다.

한국은 사형존치국이며 사형집행방법은 교수형이다. 한국은 오랜 사형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의 법의식과 법감정은 사형제도의 존치를 인정하고 있다. 형법, 군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수가 100여개가 된다. 매년 9명에서 15명의 수인들이 사형집행되며 지금도 약 50여명의 수인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1987년 이른바 가정파괴범에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름으로 보이며 단기간의 형으로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며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소위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의 말살”이란 있을 수 없으며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을 사형시킨 행위가 비록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였다는 도덕적인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는 사형제도를 재고하여야 한다. 인간의 생명권은 고유하고도 존엄한 것이며 어떠한 이유나 경우에도 유보될 수 없다. 사형제도가 지니고 있는 범죄적 성격에 비추어 볼때 사형을 시행하는 국가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사형제도는 국가에 의해 자의적이고도 임의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살인 행위일 뿐이다.